

20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3. 8.

방송통신위원회 의안·정책관리팀 (02-2110-1457)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11호

목 차

I .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3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2
2. 2023년도 정책 추진방향	13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9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현황	20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22
III. 세부 추진계획	26
전략목표 I	27
전략목표 II	57
전략목표 III	95
전략목표 IV	129
IV. 환류 등 관련계획	166
1. 이행상황 점검	167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70
3. 변화관리 계획	173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계획	178

【붙임】

1-1. 성과지표 현황	181
1-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 · 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187

■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3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2. 2023년도 정책 추진방향
-

1. 그간의 정책성과

□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책임 제고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 관계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 지상파, 종편·보도채널에 부과된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하고, 차기 심사('23년~'25년)를 위한 사전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심사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2023~2024년 공익채널 11개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1개 인정

- 이와 같이, 공영방송과 편성·제작분야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22년 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총 180개국 중 43위로 아시아 2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연도별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국가 중 2위)



□ 방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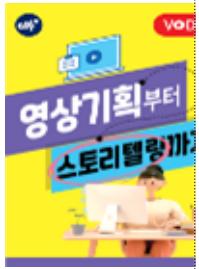
-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협약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법률전문가 등의 검토 등을 거쳐 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국내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규제, 지상파 간 지상파·유료방송 겸영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업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공개토론회 및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여 소유·겸영규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재난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21.8월,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일상화·국지화되어 가는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모두에게 정확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재난방송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지상파방송, 종편·보도채널 등의 재난방송을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구축('21.11월) 고도화('22.12월)하여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방송의 공적 역할을 제고하였습니다.
- 국지적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보유 CCTV를 방송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수어 재난방송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10개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경남 지역에도 추가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부산('05년), 광주('07년), 강원·대전·인천('14년), 서울('15년), 울산('16년), 경기 ('19년), 충북·세종('20년)
- 유아·청소년·성인·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지속 확대하여 교육 참여인원이 증가('21년 41.1만명→'22년 42만명)하였으며, 수강생의 교육 전 대비 교육 후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크게 향상(前 75.6점→後 80점)되는 등 전 국민의 미디어 활용역량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민, 노인·장애인 등 소외지역·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추가로 구축('21년 2대→'22년 8대)하였으며, 미디어교육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의 앱 서비스 개시('22.5월)로 국민이 보다 쉽게 미디어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미디온 주요 강좌>		
			

□ 방송통신분야 공정경쟁 환경조성

- 5G서비스 상용화와 전용 단말기 출시로 인한 시장경쟁 과열 상황 속에서도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관리하였습니다.
-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하여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였습니다.
- 「이동통신 단말기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도모하였고,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유도하였습니다.
- 앱 마켓사를 대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신설된 금지 행위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건전한 통신·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 자율규제 기구를 통해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대상을 불법촬영물등으로 확대하고, 인터넷 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작성·공개도록 하였습니다.
 - 인터넷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비교·식별 기술 개발 및 불법촬영물등 공공 DNA DB를 구축·제공하였습니다.

- 인터넷 사업자 대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법적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신규 제도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점검하였습니다.
-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정보, 디지털성 범죄 노출 등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보호SW(사이버안심존, 스마트안심드림)를 보급하였습니다.
- 시민 참여 기반 확대와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 factchecker.or.kr)을 활성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판별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 언론 등 전문기관의 기획 취재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팩트체크 결과물 생산 확대와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 팩트체크 교육 전문성 및 다양화를 위해 교육 콘텐츠를 다각화하고, 시민 참여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로 일상 속 정보 검증 습관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개정·시행하여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 위치정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 보호조치, 법 위반 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22년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운영 결과 >

구분	제1차(5.26)	제2차(8.26)	제3차(9.19)	제4차(10.28)	제5차(11.7)	합계/평균
세부구분	이론1	이론2	실습1	이론3	실습2	총5회
수료자	183명	112명	8명	121명	11명	435명
만족도	85.9점	87.8점	91.3점	88.3점	87.4점	88.1점
방식	온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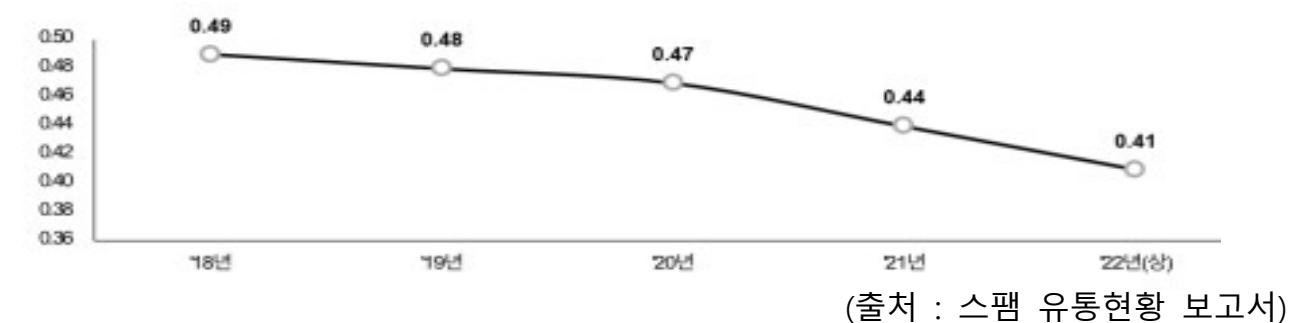
- 긴급추위 이해관계자 조율을 통해 이통사가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성공률과 정확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구분	위치성공률(%)			위치정확도(m)		
	’21년	’20년	’19년	’21년	’20년	’19년
기지국	-	-	-	146.3	225.5	264.0
GPS	86.5	82.9	80.7	53.8	60.3	62.5
WiFi	86.6	82.3	80.6	56.1	61.9	65.2

* 3개년 개선율이 가장 높은 기지국의 경우, 오차는 기존 264m(’19년)→ 146.3m(’20년)로 44.6%감소

- 배달앱(12개), 공유모빌리티 앱(12개) 등 생활밀착형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하여 관리적 기술적 조치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위치정보 사업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금융기관 사칭 불법대출 스팸 차단을 위해 금융기관 화이트리스트 기반 스팸필터링 체계를 구축·운영 하였습니다.
 - 지원금, 대출상품을 가장한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금융사 화이트리스 도입·공유로 불법 대출 스팸을 전년 대비 620만 건 감축하여 국민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 스팸 수신량 추이 >



※ 금융기관 사칭 불법대출 문자 스팸 1,491만 건 사전 차단으로 국민 피해 예방
 ※ 대출스팸 신고 건수 : 2021년 1,008만 건 → 2022년 388만 건(620만 건 감축)

- 전 국민이 디지털 역기능 문제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예방·대응 할 수 있도록 디지털윤리 교육을 제공하고 크리에이터 홍보대사를 통해 디지털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 디지털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인 미디어, MCN 기업 등과 민관협업을 추진하고,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크리에이터, 기소유예자 등에 대한 디지털윤리 특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 '22년 디지털윤리 교육 인원 >

(단위:명)

구분	유아	청소년	성인	교원	크리에이터	기소유예자 등	취약계층	합계
합계	24,924	226,674	90,878	2,684	2,796	6,086	2,287	356,329

- 비대면 서비스 및 온라인 본인확인 요구증대에 따른 신규 본인확인 기관 지정 및 본인확인기관 관리감독, 연계정보의 안전한 활용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완료('22.2월) 및 규제샌드박스 관련 연계정보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22.5월) 등

< 본인확인기관 지정현황 >

주민번호대체수단	본인확인기관 ('22.12.)
아이핀(3개)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휴대폰(3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신용카드(8개)	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농협은행
인증서(10개)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국민·신한·하나은행, 카카오뱅크('22년 신규)

이용자 피해·불편사항 적극 발굴·개선

- 국내·외 통신 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및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 이용자가 급증한 부가통신 사업자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 '21년 40개 사업자 → '22년 42개 사업자
- 통신장애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기준 시간을 단축하고 배상액을 상향하였습니다.
 - ※ 손해배상 기준 시간 : 장애 연속3시간 → 2시간
 - 손해배상액 : 인터넷6배·이동전화8배 → 10배

-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해당사업자에 전담지원창구 마련을 요청하고 방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연계한 피해 상담 지원과 약관 분석을 통해 신속한 보상여부를 점검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였습니다.
 - PC와 모바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와 비필수 삭제제한 선탑재 앱에 대한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 행정지도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이용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배너·팝업광고 등을 통해 가입되고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청구되는 방식으로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 가입·해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 분쟁조정 위원 수 증원(10명→30명) 및 직권조정결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완료('23.1.3)에 따라 통신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국민불편 해소 강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22년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24회) 및 조정회의(133회)를 상시 개최하여 '22년 조정신청 1,060건을 82.9%의 높은 해결률*로 처리했으며, 조정상담 9,817건을 처리해 최일선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 '19.6.~'20.12. (53%) → '21.1.~12. (75.6%) → '22.1.~12. (82.9%)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조정을 위해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를 운영하였고 통신품질 분쟁의 주생활지 품질측정을 실시(15회)하여 분쟁조정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온라인 서비스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 365센터」 ('22.5.31. 개소), 대국민 포털 및 지원시스템(www.helpos.kr)을 구축·운영('22.10.20~)하여 인터넷 피해구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 카카오서비스 장애 시 온라인피해365센터를 긴급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했습니다.
- 新유형 서비스 및 소관이 불분명한 피해사례에 대해 온라인서비스 피해지원협의회 MOU*를 체결(12.29)하여 피해 지원 공동대응에 앞장섰습니다.
 - * 참여기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 정보취약계층 교육을 통한 이용자 권익 증진

- 노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을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시 중요사항,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스마트 기기 활용 등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전자책, 계층별 교재, PPT, 리플렛 등 교보재를 제작 및 보급하였습니다.

□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 「방송법 시행령」 개정('21.4월)하여 1973년 이후 금지된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등 매체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가상광고 세부기준 및 협찬고지 규칙 개정('21년 9월) 통해 불필요한 형식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방송 광고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마케팅 능력 강화 및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 방송광고 지원(약 30억 원)을 통해 '22년 방송광고시장에 약 100억 원의 추가 수요를 창출하였고, '21년 대비 지원 기업들의 매출액이 혁신형 중소기업은 24%, 소상공인은 17.9% 상승하는 등 지원기업 성장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방송광고 제작지원 선순환 구조도>



□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책임 제고

- '10.29(이태원) 참사' 관련 중점 모니터링 등 방송내용 모니터링 및 심의·시정요구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방송내용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미디어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 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22.12월)하여 지상파 4사 및 종편PP 4사 대상 방송평가에 환경·투명·사회 경영 평가 항목을 도입하였습니다.

□ 방송·통신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방송사-제작사 간 외주제작 거래 실태를 조사하여 외주 제작 거래 및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였고,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연2회)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플랫폼 사업자(SO, IPTV 등) 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현황 파악을 통한 거래관행 점검('22.11~12월) 및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간의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22.7~12월)하였습니다.

□ 국내 미디어 산업 활성화

- 국내 OTT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 '국제 OTT 포럼' 개최('22.11월) 및 해외 전략진출국가 시장조사('22.12월)를 실시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방송통신 이용자 권리보호

- 유료방송(IPTV 등) 가입·변경·재약정 시 상품내용을 제대로 안내하고 의도치 않은 가입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가입정보(상품명, 약정기간, 요금 등)를 문자로 정확히 고지하는 내용의 인포그래픽 제작·홍보를 실시하여 이용자 권리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제고

-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22년 15,300대)과 성능 개선으로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편의성 제고 및 시청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 보급대상을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청각장애인으로 확대

- 시각·청각장애인의 동등한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고시 개정*)하고 장애인방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5%→7%),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 (30%→25%) 등

-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후속으로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22.5월)하였습니다.

□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개선

-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의 편성 자율권이 확대되고,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송편성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22.12월)하였습니다.

2. 2023년도 정책 추진방향

□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종편PP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추진하고, 재허가(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KBS가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확대 및 EBS 중학프리미엄 사업*을 유료에서 무료서비스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중학교과 주요 과목에 대한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지원하고, 지역방송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제4차 지역방송 발전지원계획* 수립하겠습니다.
 -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매 3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제1차 '15년, 제2차 '18년, 제3차 '21년)

□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개선

- 협약제도의 도입을 위해 협약의 체결(방통위-공영방송사)·이행 점검 등에 대해 대내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해 수신료 회계분리제도 도입 및 객관적인 수신료 산출·배분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방송법 개정안(의원발의안)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 등
- 국내·외 사례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소유·겸영 규제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 유아·청소년·성인·노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확대 및 체계화하여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미디어교육 및 방송 제작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지역 시청자미디어 센터를 확충하고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을 확대하여 지역 격차 없이 균등한 미디어교육·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방송 운영체계 고도화

- 각 법률별로 분산된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 및 재난방송 종합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 방송 종합상황실 기능을 강화하여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 재난 예보, 응급조치 및 원활한 재난방송 수행을 위해 재난관리 기관 및 주요 10개 방송사(지상파·종편·보도PP)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재난·재해 시 방송 송출 중단 사태 예방 강화를 위해 방송시설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온라인플랫폼 상생환경 조성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기구 주요 기능 및 설립·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사-이용사-이용자 간 다면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앱 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사실조사, 행정처분 등을 엄격히 집행하겠습니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및 불편해소

- 통신분쟁조정제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분쟁조정 위원 수 증원(10명→30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3.1.3. 공포)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상반기)해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 신설 등 후속 조치를 적극추진(7.4. 시행)하겠습니다.
- 온라인피해365센터 설립·운영(안) 마련 및 유관기관 협의회 정례회의 운영을 통해 365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온라인 이용자 피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건전한 통신·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유통방지 조치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 적발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이행하고,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사이버안심존 앱의 유해정보 차단기능을 태블릿 PC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여 보급하겠습니다.
- 온라인 상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일반 시민의 정보판별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대학생, 예비창업자 등 청년 스타트업 대상 창의적인 위치정보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자급제폰, 유심이동폰 등 긴급구조 정밀측위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 위치정보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위치정보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대량 문자발송사업자를 통한 불법스팸 전송 비중의 지속적 증가로 발송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사후 관리감독, 문자중계사의 자율규제 까지 단계별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 민간주도 정부지원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스팸 데이터 개방·공유를 통한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을 확대하겠습니다.
-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사이버폭력 형태의 가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생, 학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 디지털윤리교육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명예훼손,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건전한 디지털 이용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핀테크 등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보안 이슈를 반영하여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선택권 확대, 경쟁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해 '23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디지털 플랫폼 시대 이용자 권리 보호 및 역량 강화

- 디지털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사업자의 자율적인 인터넷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인터넷 불편 광고 관련 모니터링 결과 위반 사업자 행정지도와 협·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정보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및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관련 교재 제작·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진화되고 가속화되는 일상 속 통신 이용자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존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23~'24년)
 - 사업자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23.12월)
- 방송광고 규제 완화로 인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자영향평가 도입 및 사후규제체계 강화를 병행하겠습니다.
 - 「방송법」 개정안 마련 시 시청권 보호방안을 포함하여 시청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23.12월)

□ 미디어 산업 활성화 지원

- 국제 OTT 포럼 개최 및 해외 OTT 시장분석·이용행태조사 대상 국가를 확대 실시하여 국내 OTT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 설계

-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OTT) 등 미디어 매체별로 분산된 규율체계를 포괄하고 미디어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법제(안) 및 미디어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추진 등을 통해 미디어 미래비전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공적채널 평가 방안 마련

- 방송의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예산 등 공적재원 투입 채널의 공적 기능과 콘텐츠 기획·제작·편성에 대한 평가체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방송제도 관련 규제 혁신

- 지상파·종편채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60%) 개선,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상한(90%) 폐지,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합리화 등 편성규제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라디오 보험 상담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정보 부당 유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23년 상반기)하겠습니다.
- 지상파·종편PP 대상 표준계약서 활용,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마련 등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실적을 점검(연2회)하고,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소외계층 미디어복지 격차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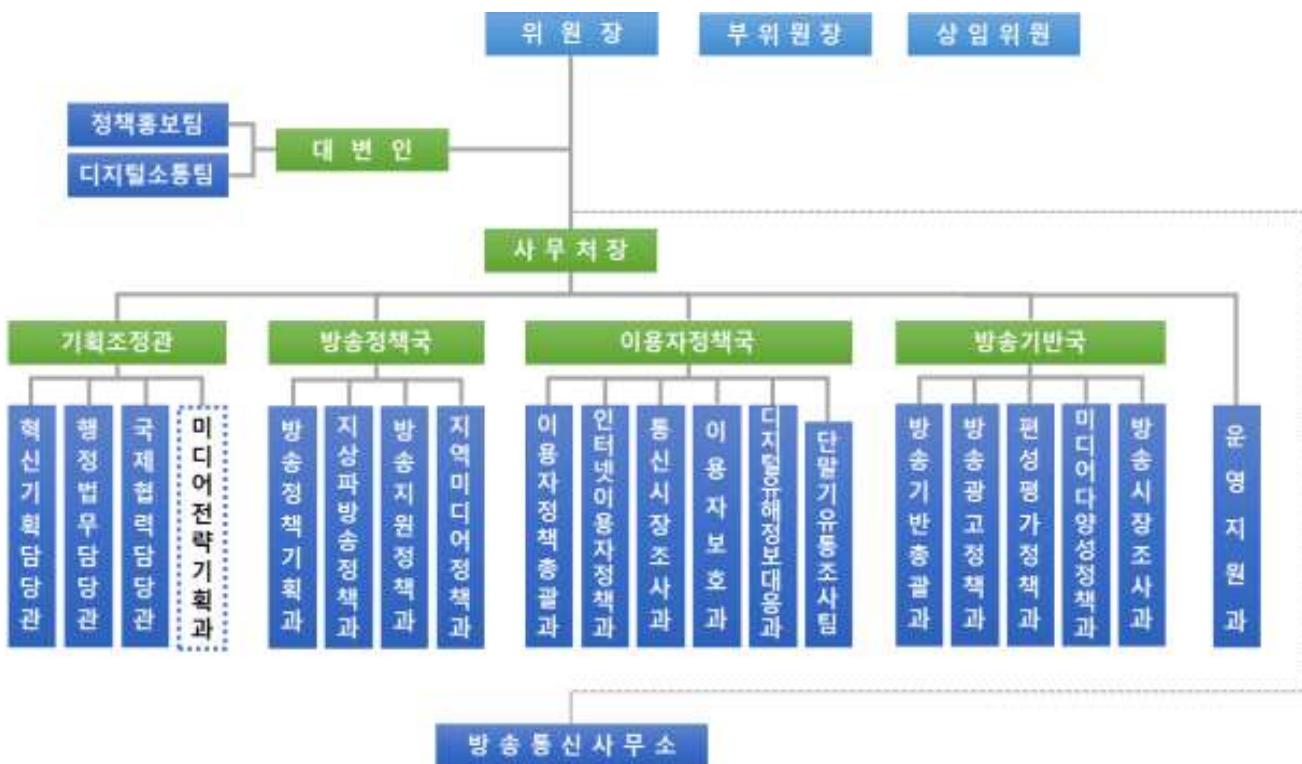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격차 없이 미디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장애인방송의 양적 확대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방송 품질 모니터링 실시 및 품질 평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화면해설방송 통합플랫폼 구축, 청각장애인용 음성·자막·수어변환 시스템 개발 및 시범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방송콘텐츠 접근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현황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 현황

(1) 조직 : 1처 3국 2관 18과(담당관) 3팀 / 1소속기관



(2) 인원 : 279명 (본부 234명, 소속기관 45명)

구 분	정무직	고위 공무원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계
본부	5	6	5	14	17	75	112	234
소속기관	-	-	-	1	-	5	39	45
계	5	6	5	15	17	80	151	279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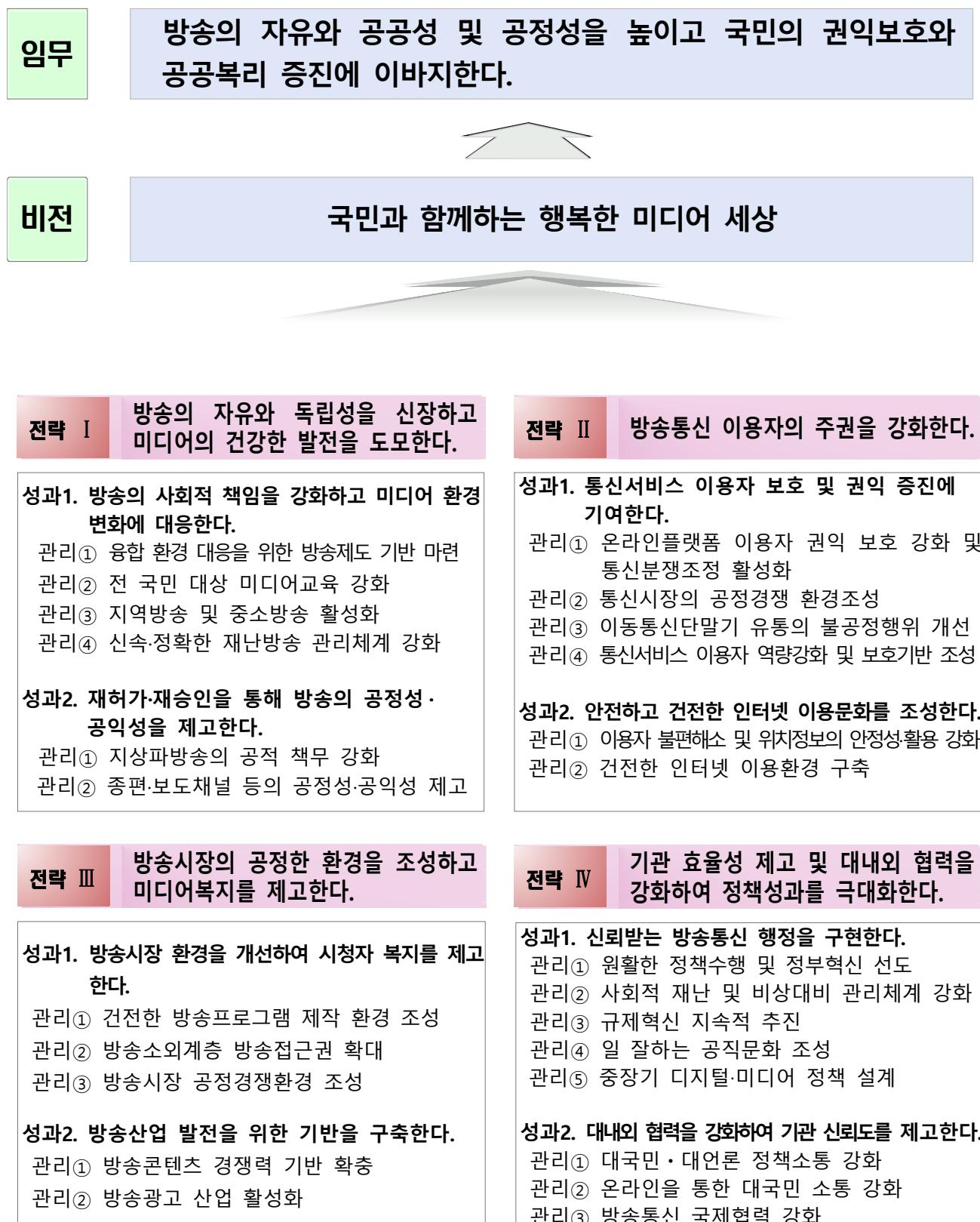
구 분	'22	'23	'24	'25	'26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2,529.4 3.1	2,607.2 24.5	3,245.1 24.5	3,227.4 △0.5	3,440.2 6.6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2,529.4 3.1	2,607.2 24.5	3,245.1 24.5	3,227.4 △0.5	3,440.2 6.6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전년대비증가율, %)	228.4 5.0	239.8 7.0	256.6 7.0	274.5 7.0	293.8 7.0
○ 기본경비 (전년대비증가율, %)	36.6 21.9	44.6 2.9	45.9 3.1	47.3 3.1	48.7 3.0
○ 주요사업비 (전년대비증가율, %)	2,264.4 2.6	2,322.8 26.7	2,942.6 △1.3	2,905.6 6.6	3,097.7 6.6
□ 예산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479.8 2.8	493.2 62.8	803.0 △8.4	735.2 3.1	758.1 3.1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479.8 2.8	493.2 62.8	803.0 △8.4	735.2 3.1	758.1 3.1
【일반회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479.8 2.8	493.2 62.8	803.0 △8.4	735.2 3.1	758.1 3.1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479.8 2.8	493.2 62.8	803.0 △8.4	735.2 3.1	758.1 3.1
□ 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2,049.6 3.1	2,114.0 13.4	2,442.1 2.1	2,492.2 7.6	2,682.1 7.6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2,049.6 3.1	2,114.0 13.4	2,442.1 2.1	2,492.2 7.6	2,682.1 7.6
【방송통신발전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2,049.6 3.1	2,114.0 13.4	2,442.1 2.1	2,492.2 7.6	2,682.1 7.6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2,049.6 3.1	2,114.0 13.4	2,442.1 2.1	2,492.2 7.6	2,682.1 7.6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미디어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허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가한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유도
- 유아·청소년·성인·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운영으로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 자율규제 기구 설립·지원을 통한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방안 마련 및 플로팅광고 관련 금지 행위 설명회를 통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권익 보호 유도
- 노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 예방 교육을 통한 이용자 권익 증진 기여
-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유통방지 조치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 적발 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
- 우수방송프로그램 시상 및 방송사의 자율적인 심의규정 준수 유도,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시청권 보장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및 건전한 방송 제작 환경 조성
-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이용·활용을 위한 편의 제공
- 외주 계약 실태, 거래 관행 실태조사 및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생하는 외주제작 환경 조성
- 국내 방송 산업과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광고·편성 분야 규제 개선 및 해외 시장 조사,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등 지속적 성장 기반 구축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지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3	8	10	25	43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환경변화에 대응한다.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국정 6-1, 업무 2-1	
② [핵심]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국정 59-1, 업무 2-3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국정 27-6, 업무 2-1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국정 59-2, 업무 2-4	
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국정 6-1, 국정 27-2 업무 2-1, 업무 2-2	
②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국정 27-2, 업무 2-2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및 통신분쟁조정 활성화	국정 59-3, 국정 59-4 업무 2-3, 업무 3-1, 업무 3-3, 업무 4-4	
② [핵심]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국정 59-4, 업무 3-6	
③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업무 3-2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	국정 59-4, 업무 3-5	
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위치정보의 안정성·활용 강화	국정 59-4, 국정 59-5 업무 1-11, 업무 1-12 업무 3-7, 업무 3-12 업무 5-2, 업무 6-3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국정59-3, 국정 59-5 국정 64-3, 업무 3-4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업무 3-4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국정 59-2, 디지털포용 2-1, 한국판뉴딜 3-2-3, 업무 2-3
	③ [핵심]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업무 3-2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국정 6-1, 국정 6-4, 국정 27-2, 국정 27-3, 업무 1-3, 2-1
	②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국정 27-2, 업무 1-2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②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④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⑤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 설계	국정 27-1, 국정 59-3, 업무 1-1, 1-5, 4
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III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I

전략목표 II

전략목표 III

전략목표 IV

전략목표 1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기본방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OTT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과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및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필요
- 디지털 기술 발달과 비대면 사회 진입으로 디지털 미디어 활용역량이 국민 필수역량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
- 방송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시청자 복지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중소방송의 공적 기능 제고 및 자립 기반 조성 필요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산불,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이 국지화·일상화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전달 필요
- 유튜브, OTT 등 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확산으로 레거시 미디어의 시장지배력과 여론영향력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방송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허가 심사 기준 마련 및 심사절차 효율화 등 필요
- 종편·보도채널이 시청률·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 받고 있으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요구

◇ 그간의 성과

-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해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방송 제작시설·장비를 무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유통활성화 및 교육·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한국PD대상 등 15개 프로그램 30회 수상, 시청·청취자 만족도 지속적 향상('20년 87.0점 → '22년 87.4점) 등 지역 시청자 복지 향상에 기여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24시간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공공기관·방송사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실시로 재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엄격한 재허가 심사를 추진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재허가 조건을 부과·점검하여 지상파 방송사의 공적책무 이행을 도모
- 종편·보도PP(6개사)를 대상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조건의 방송사별 이행 실적을 매년 철저히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 중점 추진내용

-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엄격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공영 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유아·청소년·성인·노인 등 전 국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 교육 확대로 차별없는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미디어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간 균형있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

-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1~'23)」에 따라 지역밀착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 및 유통체계 강화 등을 통해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 신규 미디어 대응 등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추진
- 재난방송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및 방송사·재난관리 기관·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확대 추진
-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승인) 심사를 실시하되, 사업자별·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재허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효율성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 추진
- 지상파, 종편·보도PP 재허가(승인) 시 부과한 조건의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여 재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성 제고

◇ 전략목표와 임무 간의 상관성

- 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 재편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글로벌 미디어 경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여 미디어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활용도를 제고하여 미디어를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
-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역량 강화 및 지역 협력 기반 강화 등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으로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 방송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수습·복구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익채널 고시 개정 및 유료방송사업자 사전동의 등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공정성 제고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6	9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 .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① 방송사업자의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
I-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다.		①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율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① 미디어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율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②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도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① 제작지원프로그램 시청·청취자 만족도 ② 콘텐츠 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①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인원 및 만족도 ② 방송재난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율
I-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제고율
	②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① 종편·보도PP 등의 공적 책무 제고율

전략목표1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1) 주요내용

□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신장

- 방송·통신의 융합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역할을 모색하고,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성장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

□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전 국민에 차별없는 미디어교육 제공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효과적 활용 및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등 신산업 분야 성장을 지원
- 지역방송의 지역 미디어 역할 수행 및 지역방송 콘텐츠의 다양화 등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 대응 및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27년 목표치	'2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22				
방송사업자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건)	-	14	23	5	4	13	최근 4개년도 평균 실적치(11.5건)를 기준으로 하되 '27년의 경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공정성 관련 제재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13건)를 설정	방송법에 따른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 + 방송 공정성 위반**에 따른 방송 심의 제재 건수	방송사업자 제재 현황

(3)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 I -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다.

(1) 주요 내용

- 방송 산업 규제 및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공성에 따른 역할 강화
-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 유아·청소년·성인·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지속 확대 및 체계화
- 지역시청자 권리보호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역량 강화, 유통 활성화 등 콘텐츠 경쟁력 제고 및 지역협력 체계 강화 등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
-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실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21 '22 '23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율(%)	100	100	100	100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와 재난방송 수신지원 관련 과제 목표달성을 결과 측정	① + ②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민족도 × 0.5 ※ 5점 리커트 척도(민족도 목표치 93.0을 100점으로 환산) ②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터널수 목표 달성을 × 0.5 ※ '23년 목표 : 51개	개별지표 실적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OTT 등 뉴미디어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의 심화 속에 전통매체인 방송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공적책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한 규제 형평성 제고와 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에 대한 필요성 증대
- 전국 10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이용자 수가 최근 3년간 지속 증가(20년 81.5만명→'22년 90.7만명→'22년 97.3만명)하는 등 미디어 교육 및 시설·장비 지원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지역방송은 지역성·다양성 구현 및 지방자치의 기여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방송환경 및 시청행태의 변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방송의 존립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 재난의 국지화·일상화, 재난유형의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개선 요구 증대

□ 갈등요인

- 지상파 등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규 미디어 간 규제형평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증대
- 지역 간 균등한 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미구축 권역에 신규 구축을 추진 중이나, 입주 건물은 지자체에서 건축 예산을 부담하고 운영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형태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지역·중소방송의 프로그램이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 콘텐츠 제작 확대 등이 필요하나 경영 약화로 투자에 소극적이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나, 예산상 지원은 한계 존재

-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시설관리자에 대해 터널·지하공간에 재난방송 수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 시설관리기관의 예산확보 미흡 및 관심부족으로 터널 등 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수신 불량률이 높음

□ 갈등관리계획

- 방송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적극 실시하여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모색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중인 지자체와는 긴밀한 소통으로 일정이 지연되지 않게 면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센터 미건립 지자체에 대해서는 센터유치에 대한 입장확인 및 센터유치 협조 요청
-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1~'23년)」에 따라 지역방송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밀착 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 유통체계 강화 등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마련
-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전달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부처 및 방송사업자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I-1-①)

□ 추진배경

- 최근 대규모 재난의 발생, 허위·조작정보의 증가 등으로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공·민영방송 구분없이 적용되었던 재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공영방송에 특화 적용 가능한 새로운 규율 체계 마련 필요
- 공영방송 수신료 등 재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공성과 신뢰성을 증진
- 국가 경제규모 성장 및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09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 개선 필요
- 추진근거
 - 「방송법」 제4조(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8조(소유제한 등), 제44조(공사의 공적책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수립)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22년 검토한 「방송법」 개정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을 거쳐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대내외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정책연구 등을 통해 방송 법령 제·개정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제도 법적 근거 마련

- (수신료 투명성 강화) 공영방송 공적 재원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한 수신료 회계분리제도 도입 및 객관적인 수신료 산출·배분 기준 마련 추진(방송법 개정안(의원발의안) 국회 논의 지원)
- (소유·겸영규제 개선) 국내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소유규제, 지상파간 및 지상파·유료방송 겸영규제 개선 추진
 - 국·내외 유사 규제사례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 마련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외 주요국 공영방송 운영현황 분석	'23.2월	
	공영방송 협약제도 운영방안 검토	'23.3월	
	소유·겸영 규제 국내·외 유사 규제사례 분석	'23.3월	
2/4분기	공영방송 협약제도 관련 정책연구과제 추진	'23.5월	
	방송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발전방안 정책연구과제 추진	'23.5월	
3/4분기	소유·겸영 규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3.9월	
	방송의 날 행사 개최	'23.9월	
4/4분기	공영방송 협약제도 관련 법 개정안 마련	'23.12월	
	소유·겸영 규제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23.12월	
연중	수신료 관련 법제도 개선활동 지원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시청자) 공영방송의 책임감 있는 공적 책무 이행으로 시청자 권익이 증진되고,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완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로 고품질의 콘텐츠 시청 가능

- (방송사업자) 공영방송사업자의 위상 제고로 공적역할 강화 기틀이 마련되며, 방송사 경영 안정성 및 투자환경 개선

□ 기대효과

-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 공영방송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을 강화하고 수신료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
-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 완화에 따라 방송사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국내 미디어 시장 경쟁력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미디어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율(%)	100	100	100	96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에 관해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23년 목표치를 96%('22년 목표치 94%에서 2% 포인트 상향)로 설정	< ① + ② > ①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율(0.5) -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의견수렴X0.1)+(정책연구과제 추진 X0.2)+(협약제도 방송법 개정안 마련X0.2) ② 소유·겸영규제 개선 추진율(0.5) - (소유·겸영규제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X0.1)+(소유·겸영규제 개선 관련 의견수렴 X0.2)+(개정안 마련 X0.2)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I -1-②)

□ 추진배경

- 디지털 기술 발달과 비대면 사회 진입으로 디지털 미디어 활용역량이 국민 필수역량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지원 필요

< 국정기조와 연계성 >

- 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국정 59-1)
-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업무 2-3)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유아·어린이·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맞춘 커리큘럼을 개발, 배움의 현장에 방문하여 미디어 이론·체험교육 실시

구분	주요내용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 형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방문하여 스마트폰 활용, 미디어 이용 규칙 만들기 등 놀이형 미디어교육 제공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디어 분야 진로 탐색을 위해 학교 교과 및 동아리(초중고), 자유학기제(中), 고교학점제(高), 대학 등과 연계교육 제공
청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미디어 콘텐츠 기획·촬영·편집 등 미디어 전문 인재 양성 및 취·창업 연계교육 제공(지역 센터 및 온라인을 통한 상시교육)

- (디지털 격차없는 평생교육) 디지털 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도 빠짐없이 특성에 맞는 미디어 교육 제공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특수학교 학생 등에 미디어를 통한 자기표현 교육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중단 및 자퇴 청소년 등 자아존중감 회복, 브이로그 제작 교육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상 노인, 퇴직자 등· 디지털기기(키오스크 등) 활용 교육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과 연계하여 우리동네 영상제작 및 상영회 개최
다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등에 한국사회 적응 위한 미디어교육	도서산간 지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통한 미디어 체험 및 섬마을 미디어캠프 등

- **(미디어 인프라 확대)**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및 센터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확대, 국민 누구나 미디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 고도화

구분	주요내용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 경남·대구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추진(계속, '23.하 개관 예정)
미디어 나눔버스	· 지역 간 차별 없는 미디어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산간 지역 등에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8대) 운영 확대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 국민 누구나 미디어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 고도화 및 신규 온라인 교육 강좌 개발·운영

- **(미디어 전문성 강화)**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조사, 강사 양성·연수, 관련 연구 추진 등 미디어교육의 품질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

구분	주요내용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조사	·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20년~), 조사하여 미디어교육 수강 전후 역량 차이를 분석
강사 양성·연수	· 미디어교육 강사에게 필요한 집중 역량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양성 및 연수 과정 운영
미디어교육 연구	· 전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및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체계화 방안 연구 진행
교안 개발	· 유아·장애학생 등 교육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미디어 교육 운영을 위한 교안·교구 등 개발
전문지 발간	· 미디어교육 분야 교·강사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동향, 우수 교육사례 등을 담은 미디어교육 전문지 발간
자문회의체 운영	· 정부·공공기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통해 미디어교육의 정책 방향 및 발전방안 논의

- **(미디어교육 참여행사 개최)**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모전·페스티벌 개최 추진

구분	주요내용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 (대전)	· 청소년의 미디어교육·체험 확대를 위한 공모전·토론회·특강 등 미디어 페스티벌 개최
장애인 미디어 축제 (부산)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없이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영화상영·전시회·특강·체험 등 미디어 축제 개최
미디어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 미디어교육 분야 교·강사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시상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한 공모전 개최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상설 미디어교육 운영	'23.1~12월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운영	'23.3~12월	
2/4분기	온라인 미디어교육 신규 강좌 개발 및 운영	'23.4~12월	
	대상별 맞춤형(유아·특수학교) 미디어교육 교안 개발 연구	'23.4~12월	
3/4분기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도 조사	'23.7~11월	
	지역 센터별 미디어교육 참여행사 개최	'23.8~12월	
4/4분기	미디어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23.9~11월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전 국민이 쉽게 적응하고 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별없는 미디어교육 지원

○ 이해관계자

- (지방자치단체) 기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건립된 지역(10개)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하고, 미건립 지역에는 신규 구축·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

□ 기대효과

○ 전 국민에 균형있는 미디어교육 제공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의 효과적 활용 및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 창출 여건 조성을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2	'23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③)		
① 시청자 권리보호 및 참여 활성화(3133)	271	268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303)	방송통신 발전기금	255 42
- 시청자권익증진 사업		44
-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3	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92.4	92.6	92.8	93.0	본 최근 3년간('20~'22년) 이용자 만족도 평균값(92.6점)에 평균 증가율(0.3%)을 적용(92.8점)하고, 보다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0.2점을 상향시킨 93점을 '23년 목표치로 설정	5점 리커트 척도 (100점 만점 환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센터 이용자 설문 조사(E-mail, 전화 등)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도(%)	-	-	신규	6	본 지표는 신규지표이나, 보다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22년 실적(5.8%) 대비 3% 상향시킨 6%를 '23년 목표치로 설정	{(교육 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점수-교육 전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점수)/교육 전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점수}*100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센터 이용자 설문 조사 (온라인)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I -1-③)

□ 추진배경

- 미디어 환경 및 이용행태의 변화에 따라 지역방송의 지역문화 정체성 확보 및 지역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제3차 지역방송 발전지원계획'에 따라 지역방송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프로그램 제작지원)** 지역밀착 우수 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 신규 미디어 대응 강화로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향상 및 지역성 강화
 - 지역 밀착형, 경쟁력 강화, 신유형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를 신설 및 확대 추진하여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제고
- **(유통체계 강화)** 국내·외 콘텐츠 시장 판로 개척 및 콘텐츠 홍보 등으로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기반 조성
 - 해외 콘텐츠 마켓 참가, 우수 콘텐츠 재제작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국내·외 방송사 공동제작 등 파트너십 구축 지원
- **(지역방송 재직자 교육 지원)** 방송환경 변화 대응 및 신기술 도입 등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맞춤형 교육과정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및 지역방송 성장 기반 마련

- (중장기 지원방안 마련)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1년~'23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 진단 및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내실 있는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4년~'26년) 수립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작지원 프로그램 공모·심사 및 지원작 선정	'23.2~3월	
	상반기 맞춤형 교육 과정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23.3~6월	
2/4분기	지역방송 재제작 콘텐츠 선정 및 지원	'23.4~6월	
	해외 피칭포럼 참가 대상 모집 및 교육	'23.5~12월	
	해외 콘텐츠 마켓(베트남 Telefilm) 참가 지원	'23.6월	
3/4분기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사 현장점검	'23.7~8월	
	하반기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23.7~12월	
	하반기 지역방송 재제작 콘텐츠 선정 및 지원	'23.9~12월	
	국내·외 피칭포럼 참가 지원	'23.9~12월	
4/4분기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자 만족도 조사	'23.11~12월	
	해외 콘텐츠 마켓(싱가포르 ATF) 참가 지원	'23.12월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지역·중소방송 시청자) 우수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한 다양한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으로 시청자의 복지 향상
- (지역·중소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유통 활성화, 종사자 교육 지원을 통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수익기반 창출

○ 이해관계자

- (중앙지상파방송사) 지역·중소방송 지원 정책이 중앙지상파 방송사와 이해관계 상충 시 양측의 의견조정 및 협조 필요

- (지역 유관기관) 지역방송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미디어센터, 유관기관 등 유기적인 협력 필요

□ 기대효과

-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 방송품질 향상 및 콘텐츠 경쟁력 제고 →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수익 창출 → 제작비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여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로 지역방송 발전기반 마련
- 지역방송 우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우수 인력 발굴 육성 및 해외 수출 촉진 등을 통해 지역방송 활성화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2	'23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1-일반재정①)			
① 방송인프라 지원(3131)		45.3	45.3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308)	방송통신 발전기금	45.3	45.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 만족도	87.0 87.3 87.4	87.6	전년도 만족도 결과치(87.4점)와 만족도 결과의 한계치를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목표치 설정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자 만족도를 정량화된 설문을 통해 계량 측정 (7점척도 설문을 백분율로 환산)	시청·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콘텐츠 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	신규 185	206	최근 3개년 참가 마켓 출품 수 평균 증가량*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2% 상향된 206건으로 설정 * 최근 3개년 증가량 : 약 12%	국내외 참가한 콘텐츠 마켓에 출품된 우수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수 측정	사업결과보고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I -1-④)

□ 추진배경

- 국가차원의 방송재난 관리를 통해 방송재난을 예방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수습·복구하여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과 재난 방송 실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한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재난취약계층을 고려한 한국수어 통역사 재교육 실시로 재난방송 품질 제고 및 공익성 확대
 - 방통위에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73조, 「재난 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재난방송 의무사업자(51개사)의 재난방송 실시 현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재난방송 미실시 사업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등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으로 효율적인 방송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방송 실시 체계 확립
 - 지진·태풍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방송시설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원활한 수신 확보를 위해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KBS의 재난방송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 인력 확충 및 한국수어 방송 강화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서비스 제공 확대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수어방송 실시(KBS)	연중	
	재난재해 행동요령 콘텐츠 제작·공유	연중	
	한국수어 통역사 재교육	연중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연중	
	해빙기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3월	
2/4분기	'22년 3~4분기 재난방송 실시 결과 점검	4월	
	1분기 재난방송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4월	
	기상청·산림청 등 재난관리기관과의 상설 협의 추진	4월	
	재난방송 표준매뉴얼 운용실태 점검	6월	
	하절기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6월	
3/4분기	2분기 재난방송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7월	
	'24년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9월	
	'23년 1~2분기 재난방송 실시 결과 점검	9월	
4/4분기	3분기 재난방송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10월	
	방송재난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12월	
	동절기 대비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	12월	
	'23년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및 기술 컨설팅 완료	12월	
	(가칭)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안 마련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 산불, 태풍,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적·사회적 재난 발생 관련 국가 혼란 최소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방송서비스에 대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 및 중단 없는 방송서비스 제공
- 주관방송사의 역할·책임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정보 제공과 재난 취약계층을 배려한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이해관계자 : 정부부처(행정안전부 등), 방송사업자(지상파·종편·보도PP 등)

-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 전달과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방송사업자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

□ 기대효과

- 지상파방송, 종편·보도PP 등의 재난방송을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방송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산불, 지진, 태풍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재난취약계층 특히 청각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재난정보 전달을 통해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기여
- 종합적인 방송재난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실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2	'23
방송통신행정지원(성과관리 비대상)			
① 방송통신운영지원(7131)	일반회계	7.53	8.63
■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307)		7.53	8.63
- 방송재난관리 강화		2.00	2.00
- 방송재난관리 활동지원		0.20	0.20
-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 활동지원		0.36	0.36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4.97	6.07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I-1-일반재정①)			
① 방송통신운영지원(3135) ³⁾	기금	40.20	28.23
■ 재난방송 운영지원(307)		40.20	28.23
- KBS 재난방송 운영지원		24.16	21.19
-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1.04	1.04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15.00	6.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인원 및 만족도(점) (공통지표)	신규 94.9 105.7	97.5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재난방송 시 한국수어통역이 가능한 인력 확충을 위해 설정	① + ② ① 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인원 (목표 110명) × 0.5 ② 수어통역사 재교육 만족도 (목표 85점) × 0.5 [23년도 안전점검 시설 수/안전점검 대상 총 시설 수 (104개소)] × 100	내부자료
방송재난 대비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율(%)	신규 100 100	93	중요 방송시설 취약·위험 요인을 사전 벌굴 개선하여 중단 없는 방송 서비스 실시를 위해 설정		내부자료

성과목표 I -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공정하고 투명한 지상파·종편PP 재허가·재승인 심사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무·공익성을 제고하고, 공영방송 콘텐츠 제공 확대로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 및 시청자 미디어복지에 기여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97.2	99.5	99.4	94	<p>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현황에 대한 엄격한 점검 결과 '20~22년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음</p> <p>다면, 직전 재허가·재승인에 비해 엄격한 조건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목표치(92%)보다 상향된 목표치 설정(94%)</p>	<p>[(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 × 0.5]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수) × 0.5]</p> <p>* 경영의 독립성, 편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사 등의 장기연임 해소 방안 마련 등</p> <p>**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사업계획 준수, 방송심의규정 위반 법정제재 건수 연 5건이하 유지(선거별 2건), 전문 외부 기관의 공적책임·공정성 진단 등</p>	실적 점검 결과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 유튜브, OTT 등 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확산으로 지상파·종편·보도 PP의 시장지배력과 여론영향력이 변화되고, 미디어 간 경쟁 심화로 방송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공익성 훼손 우려
 - 방송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허가·재승인 심사평가 기준 마련 및 심사절차 효율화 등의 필요성 대두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시 부과한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사업자의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필요

□ 갈등요인

- 재허가 신청 서류 및 재허가 조건 등이 과도하여 재허가 심사 및 이행점검 관련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
- 종편PP 관련 정책은 국회·시민단체·일반국민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정부 규제와 방송 산업 활성화 간의 조화로운 균형점 모색이 필요

□ 갈등관리계획

- 재허가·재승인 심사 및 조건 이행점검 시 공적 책무 관련 사항을 적극 점검하고,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사전에 공표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 제고 유도
- 종편PP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및 사업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소통 절차를 강화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I-2-①)

□ 추진배경

- 방송 매체 다변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되,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제고를 위한 재허가 심사 등 추진
 - 재허가 심사의 효율성 및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23~'26년 재허가 심사 기본계획 수립('22.9.)
 - 기존 재허가 시 부과한 조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철저한 이행 점검 필요
- * 주요 조건 :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 비정규직 근로실태 조사, 협찬고지 관련, 경영의 독립성, UHD 편성실적, 외주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준수 등
- OTT 등의 성장으로 수많은 상업 콘텐츠와 겹증되지 않은 정보가 범람하여 공영방송 등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증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재허가 및 이행점검) '23년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4개사 153개 방송국에 대한 엄격하고 투명한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재허가 조건 부과 및 이행점검 추진
 - 사업자별·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재허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부담 완화 및 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허가 심사 기준 및 절차 등 개선^{*} 추진

* 서류제출 간소화, 조건부과 최소화 등

- '19~'22년도 지상파 재허가 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과한 재허가 조건에 대해 이행실적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 유도

※ 추진근거 : 「방송법」 제9조(허가 등), 제17조(재허가 등) 및 제99조(시정명령 등)

- (공영방송 콘텐츠 제공확대) 실시간 방송 등에 한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공영방송 콘텐츠의 무료 제공 범위 및 시청 서비스 대상 확대 추진
- KBS가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에 대한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드라마 몰아보기 등) 확대 제공 추진
- EBS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콘텐츠 무료 시청 서비스 대상을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이하), 법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지상파 재허가조건 이행실적 접수	4~6월	
	지상파 재허가 심사 세부계획 의결	6월	
	지상파 재허가 신청서 접수	6월	
	공영방송 콘텐츠 제공 확대 관련 사업자 협의	6월	
3/4분기	지상파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접수, 기술심사 등	7~10월	
	지상파 재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9월	
4/4분기	지상파 재허가조건 불이행 방송사에 대한 후속조치	11월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회 의결	12월	
	공영방송 콘텐츠 제공 확대 완료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해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과 민주적 여론형성 환경조성

○ 이해관계집단

- (지상파방송사) 「방송법」 및 「전파법」에 따라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허가 조건에 따른 이행실적 제출 의무가 있음

□ 기대효과

- 공정하고 투명한 허가·승인 심사를 통한 방송의 공익성 및 공적 책임 제고
- 공영방송의 콘텐츠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시청자 권익 증진 및 미디어 접근권 보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제고율(%)	97.2 99.5 98.6	98.4	○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	[(재허가 세부 계획 반영 건수 /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 수립시 세부 계획으로 위임한 건수) × 0.5] +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 × 0.5]	실적자료

②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정성·공익성 제고(I -2-②)

□ 추진배경

- (종편·보도PP) 「방송법」 제9조 및 제17조 등에 따라 종편·보도 채널은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년 재승인 시 관련사항을 엄격히 심사하고, 관련 재승인 조건*을 부과
 -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 준수,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정성에 대한 외부기관의 객관적 진단, 방송심의 법정제재 연간 5건 이하 유지 등
 - (공익채널)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법」 제70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2에 따라 2년마다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공익채널과 인정한 장애인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함

<'23~'24년도 공익·장애인 복지채널 선정 현황>

구 분	공익성방송분야	해 당 채 널
공익채널	사회복지	소상공인방송, 다문화TV, 한국직업방송, 육아방송
	과학문화진흥	사이언스TV, 아리랑TV, 토마토클래식
	교육지원	EBS English, EBS플러스1, EBS플러스2, MBCNET
장애인복지채널	복지TV	

- (사전동의) 「방송법」 제9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재)허가 시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방통위는 제도의 취지·목적, 동의의 내용과 성질,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과 관련한 조건을 부과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종편·보도PP) 종편·보도PP에 부과된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금년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PP(2개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재승인 심사 추진
 - (공익채널) '23~'24년 선·인정 사업자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그간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고시 개정^{**} 등 개선 방안을 검토
- * '23~'24년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심사위원회는 교육 및 지역분야에 3개 채널이 선정된 EBS로 인해 타 채널의 선정기회가 축소되는 점을 개선하고 공익채널 방송분야를 개편할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였음
- ** '21년도 고시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서식 삭제 및 신청 서식 간소화 등
- (사전동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의 실현가능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중점 검토하여 유료방송사업자 (SO·RO·위성) 재허가 및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방송의 공적책임 등) 이행실적 접수	'23.1~4월	
	'23년도 상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23.2~3월	
2/4분기	'23년도 상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결과 의견	'23.3~4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서면점검 및 현장실사 등	'23.5~9월	
3/4분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23.5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서면점검 및 현장실사 등	'23.5~9월	
4/4분기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서면점검 및 현장실사 등	'23.9월	
	공익채널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23.10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	'23.10~11월	
	'23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결과 의견	'23.10~11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23.10월	
	공익채널 고시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종편·보도 및 공익채널, 유료방송사업자 등의 공익성을 제고하여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여론 수렴환경 조성

-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재승인(허가) 관련 사전동의 심사 등을 받아야 하며 재승인(허가) 조건 이행실적 제출 의무가 있음

□ 기대효과

- (종편·보도PP) '20년 재승인 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을 제고 유도
- (공익채널) 공익채널 및 장애인 복지채널 제도개선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복지 향상에 기여
- (사전동의) 사전동의 절차는 유료방송의 공적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사업 허가제에 절차적 정당성과 공익성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3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적 책무 제고율(%)	100	100	100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률은 전년도 목표치(92%) 대비 상향(94%) ○ 공익채널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최종 목표치는 100% ○ 유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사전동의는 요청건수 대비 처리건수로 수치화하여 목표치(100%) 설정 ○ 각 과제의 목표를 측정산식의 과제 비율로 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률 $(94\% \times 0.5) +$ 공익채널 제도개선 $(100\% \times 0.3) +$ 사전동의 심사 $(100\% \times 0.2)$ 	$[(\text{방송의 공적책임 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 건수}/\text{방송의 공적책임 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수}) \times 0.5] +$ $[(\text{공익채널 사업자 의견수렴 및 제도 개선 } \times 0.3) +$ $(\text{유료방송 (재)허가 변경허가 사전동의 처리건수 } / \text{사전동의 요청건수} \times 0.2)] \times 100$	실적자료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법령에 따른 평가 및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등을 통해 이용자 권리 증진
- 불법유해정보 및 불법스팸 유통 차단,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단말기 유통 시장 제도 개선과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 조사·점검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용자 편의 제고

◇ 그간의 성과

- 신속한 통신분쟁조정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 수 증원, 직권조정 결정제도 도입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완료('22.12)·공포('23.1)
-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관련 4G/5G/인터넷 등 신청인 주생활지 (거주지, 직장 등) 품질측정 실시와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한 분쟁 해결 및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
- 온라인피해 관련 일원화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체계적·종합적 피해 지원을 통해 이용자 권리 증진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을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속 확대하고, 플로팅 광고 및 비필수 선탑재앱의 삭제제한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
- 통신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시간 단축 및 배상액 상향,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지원 체계 구축 등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강화
- 정보취약계층 대상 온라인 플랫폼 등 신규 통신서비스 활용 및 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 인터넷상 불법촬영물등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부가사업자(웹하드·P2P)'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실태점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급협의회 개최
-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사업자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사이버안심존앱 보급·확산
-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구축·고도화하고 팩트체크 교육·홍보 등 가짜뉴스 대응기반 강화
- 「이동통신 단말기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유통점 점검을 통해 불법지원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방지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도모

◇ 중점 추진내용

- 이용자 피해 사전예방,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편의과 혜택 증진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비대면교육 전환 가속화 등의 환경에서 인터넷 역기능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과의존, 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 보호
- 디지털성범죄물 등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근절하고, 2차 범죄를 유발하는 불법스팸 데이터 차단 강화
- 민간 자율적인 가짜뉴스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 시민대상 교육 및 공모전을 추진하고, 민간 협의회를 통해 가짜뉴스 자율규제 방안 논의

◇ 전략목표와 임무 간에 상관성

- 신규 서비스 도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 취약계층 교육 등 이용자 역량 및 권리 강화 등을 통해 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6	1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 강화한다.		① 통신·인터넷시장 제재건수
II-1. 통신·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		① 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건수
	① 온라인 플랫폼 정책 개선건수	① 온라인 플랫폼 정책 개선건수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② 통신분쟁 해결률(누적)
	③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 행위 개선	③ 온라인 피해 상담 건수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	① 유선시장 전기통신사업 법령 준수율
II-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 지수
	①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위치정보의 안전성·활용 강화	①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률
	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① 팩트체크 교육수료율
		① 위치정보 사업화 지원 만족도
		②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
		③ 디지털 윤리교육 만족도
		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불법정보 기술적 조치 개선율
		②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기술성능평가 수행률

(1) 주요내용**□ 신규 ICT 서비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용자 정책**

- 메타시대를 맞아 산·학·연 협의회를 운영하여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신규 ICT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 논의
-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자율성·혁신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규제 원칙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
- 포털의 기사·동영상의 배열 및 노출 알고리즘, 제공 방식 등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법적 방안 마련 추진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및 불편해소

-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정결과 대국민 공개로 국민편의 증진
- 온라인 상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처하는 일원화된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 및 편의 증진
-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세부유형과 판단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앱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
-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개선과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이용자 편의 제고

□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

- 위치기반 우수 중소·영세·청년 스타트업 사업자들을 발굴하여 특허출원, 투자유치 및 해외판로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 도모

- 이통사유통폰, 자급제폰 및 유심이동폰 등에 대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을 측정하여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개선
- 위치정보사업자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법규 준수 유도 및 이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환경 제공
- 휴대전화·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스팸 유통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
- 문자발송사업자를 통한 불법스팸 전송 비중의 지속적 증가로 문자 발송사업자 대상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추진
- 전 국민의 디지털 역기능 유해성 인지 및 올바른 디지털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유아, 청소년, 성인 등 대상별 디지털 이용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 확대 및 홍보 추진

□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모니터링 및 점검 추진
- 태블릿 PC에서도 청소년유해정보차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 S/W 기능 고도화 및 보급 추진
- 민간 자율 가짜뉴스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 시민대상 교육·공모전 실시 및 가짜뉴스 자율규제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 이용자 권리 보호 정책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정보취약 계층별 맞춤형 교육,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정보제공을 통한 이용자 역량 제고

- 이용자가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유도를 위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방안 마련
- 플로팅광고 관련 설명회 개최를 통한 인터넷 이용 환경개선 노력 유도
- 비필수 삭제제한 선탑재앱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의 앱 선택권 제한 등 스마트폰 앱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해소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2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22	'27			
통신·인터넷시장 제재건수(건)	-	신규	6	10	8	10	과거 실적 및 추세와 '22년도 실적인 8건을 감안하여 '27년에 10건을 목표로 설정 ※ 21년 10건, 22년 8건	연간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상, 위치정보법 상 제재건수 집계	심결서

(3)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 II-1

통신·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1) 주요 내용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통신분쟁조정 활성화

- 디지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른 이용자 보호정책 추진
- 메타버스 등 신규서비스 등장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필요
-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성장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자 피해의 복잡·다양화에 대비한 이용자 교육 강화
- 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조사·제재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질서 확립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이통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건전한 발전 유도
- 통신서비스 불편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분쟁조정 위원 수 확대 등 통신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대국민 통신분쟁조정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 실시
- 온라인 상 다양한 피해에 대해 상담 창구 일원화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로 이용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 도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건수(건)	8	8	8	8	유·무선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 마련 등은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므로 동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통한 개선실적	내부자료, 상정안건, 실태점검 보고서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 규제 및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 제기
- AI·메타버스 등 복잡하고 다양해진 통신서비스의 활성화로 이용자 불편 및 피해 또한 복합적으로 진화될 전망
-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용자 불편 및 피해, 법적 쟁점 등이 복잡하게 발생
- 전세계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며 산업생태계 패러다임이 기존 전통산업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
 -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어 이용자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로 불공정 행위 심화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증가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플랫폼의 영향력이 전 산업 영역으로 확대
- 조정위원회(상임5명 포함) 30명 증원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완료 ('22.12월)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 필요('23.7월 시행)
- 코로나19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온라인 상 경제 활동 등이 일상화되면서 그 피해도 다양화되고 급속히 증가

□ 갈등요인

-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악용 등 이용자에 대한 피해 가능성 증가

-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편향성·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확증 편향, 필터 버블 등의 역기능 발생
- 4G·5G·인터넷 등 품질 분쟁과 관련하여 신청인 주생활지(거주지, 직장 등) 품질측정을 진행하여 분쟁조정 가능성 제고('22.6월~)
- 온라인 상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제도·정책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으며 소관이 불분명한 사각지대도 존재

□ 갈등관리계획

- 이용자 권리 보호 및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 방안 마련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 유도
- 급변하는 통신시장에 맞춰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해 이용자 권리 증진 기여
-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 보호정책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통신분쟁조정 활성화(Ⅱ-1-①)

□ 추진배경

- 인터넷 이용이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고 주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 보호 이슈가 대두
-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제도화 및 정부지원 필요
- 통신서비스 이용자 및 신규서비스의 증가로 이용요금, 속도품질 등에 관한 통신서비스 불만도 증가하여 폭증하는 분쟁조정신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
- 온라인 상 다양하고 복잡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맞는 피해 구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담센터 구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보호) 지능정보기술 발달·확산에 따른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능정보사회 정책기반 마련
 - 메타시대를 맞아 산·학·연 협의회를 운영하여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신규 ICT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 논의
 -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기술 수용도 및 권리의식 등에 대한 패널조사 진행 및 결과 발표
 - 포털 뉴스·동영상 추천 알고리즘 검증체계 신뢰성 확보, 뉴스제휴 평가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포털 뉴스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2기)' 구성·운영

- 민관 공동의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신유형 불공정 행위 및 피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안)' 마련
 -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기재부·과기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플랫폼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자율규제 정책적 지원
- 플랫폼·이용사업자·최종이용자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간 자율기구를 운영하여 이용자 보호방안 논의
- 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 근거 주요기능을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방송통신 조사업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과 조사관 교육 등 실시
 - 통신서비스 관련 국민의 불편해소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통신분쟁 해결률 제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22년 사례집 발간·배포, 통신분쟁 조정사건 처리결과 분석·공개, 통신품질분쟁 품질측정 실시 등
 - 온라인상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을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 온라인상 피해구제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적근거 마련 추진
 - 온라인 서비스 피해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MOU를 확대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활성화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 통신분쟁조정사례집·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 분쟁조정 지원시스템·온라인피해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국민편의 증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공포(분쟁조정 관련)	'23.1월	
	'22년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	'23.1월	
	'22년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23.2월	
	통신품질분쟁 품질측정 실시(매월)	'23.1월~	
2/4분기	온라인피해365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전문가 세미나 등 추진	'23.5월	
	「포털 뉴스·동영상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2기)」 발족 및 운영	'23.5월	
	통신분쟁조정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준비	'23.6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세칙개정	'23.6월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위촉 추진	'23.6월	
3/4분기	통신분쟁조정시스템 고도화, 모바일 서비스 진행준비	'23.7월	
	온라인 피해상담 지원시스템 고도화 등 피해구제 지원 강화	'23.7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개시	'23.8월	
	메타버스 공동체 발전방안 마련	'23.9월	
	조사관 전문 교육 실시	'23.9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 조사 실시	'23.10월	
4/4분기	통신품질분쟁 품질측정 연간사례 분석	'23.12월	
	포털 뉴스·동영상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23.12월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안) 마련	'23.12월	
	온라인플랫폼 민간자율규제기구 법적 근거 마련	12월	
연중	온라인플랫폼 민간자율규제기구 분과 운영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전 국민)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합의 및 조정을 통해 소송 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

-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효과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및 피해구제를 지원하여 전 국민 권익증진 도모

□ 기대효과

- 다수의 이용자가 활용하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서비스 등에 있어 이용자 주권을 확보하여 신규 ICT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를 통한 사업자의 책임성 부여 및 정부지원 근거 마련
-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으로 보다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국민불편해소 1번지로 안착 및 분쟁조정 해결률 제고 기대
- 온라인 상 다양한 피해에 대해 상담 창구 일원화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지원이 가능해져 이용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
- 온라인피해365센터 구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상 피해구제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방송통신운영지원(성과관리 비대상)			
① 방송통신운영지원(7131)		1.2 (50.30)	1.2 (45.14)
■ 행정사무정보화(308) - 방송통신조사시스템 운영			
	일반회계	1.2	1.2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I-1-일반재정①)			
②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3200)		(186.01)	(190.92)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308)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301) -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319) -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구축·운영			
	기금	11	11
	일반회계	7.13	6.81
	방송통신 발전기금	13.18	10.7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온라인 플랫폼 정책 개선 건수(건)	신규	3	3	3	통신·인터넷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므로 이를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22년 이용자정책총괄과 제도개선 실적(3건)*과 동일하게 3건을 목표로 설정 *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기구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3건	정책개선 건수를 결과물로 실적 산정	정책 개선 관련 위원회 안건, 보도자료 등
통신분쟁 해결률(누적 %)	-	-	66.2	66.5	통신분쟁 제도가 국민에게 유익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통신분쟁 해결률*'을 설정하고 매년 목표치를 0.3%p씩 향상시키는 것으로 함 * '19.6월~'22년 해결률(66.2%) : 누적 총해결건수(1,944건)/누적 총신청건수(2,938건)	(누적 총 해결건수/누적 총 신청건수) × 100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온라인 피해 상담 건수(건)	-	-	신규	1,200	온라인피해B65센터가 온라인 이용자에게 유익하게 상담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온라인피해상담건수'를 설정하고 '23년도 목표치를 전년대비 10% 향상시키는 것으로 함	('22년 상담건수÷7×12×110%)-'22년(6~12월) 상담건수를 12개월로 환산 후 10% 상향	온라인 피해상담 건 (전화, 홈페이지, 우편, 카카오톡 등)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II-1-②)

□ 추진배경

- 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조사·제재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질서 확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보호 등을 위한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23.7월~12월)
-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플랫폼 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대응을 위한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 실시('23.1월~12월)
-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 실시 및 후속조치('23.1월~12월)
-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시 허위·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광고로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실태점검 ('23.4월~)
-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23.11월~)
- 구내통신사업자가 집합건물 통신서비스를 독점제공 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 추진('23.9월~)
- 무선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자회사, 비자회사 간 불공정 경쟁 유도, 알뜰폰 사업 현황 등 무선 재판매 시장 경쟁상황 확인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23.4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연중	경품 제공 수준,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1~12월	
	앱 마켓사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 및 후속조치	1~12월	
	인터넷플랫폼시장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	1~12월	
2/4분기	알뜰폰 사업 관련 정책연구 추진	4~12월	
3/4분기	허위과장기만광고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실태점검	4월~	
	구내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개선 추진	9월~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7~12월	
4/4분기	경품 제공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 실태점검	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혜택 수혜

※ 유선통신서비스(인터넷, IPTV 등) 및 앱 마켓 이용자 등(전국민)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앱 마켓사업자 및 앱 개발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사업자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 기대효과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 이익 제고

-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 사업자간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를 근절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I -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	일반회계 (85.05)	20.85 (86.28)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302)		20.85
-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분석체계 운영		0.92
- 인터넷플랫폼 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3.97
		23.50 0.92 5.9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유선시장 전기통신사업법령 준수율(%)	86.0 87.0 87.6	87.9	3개년('20~'22년) 평균실적(86.9%) 및 '22년 이동평균값(87.3%)을 고려하여 '22년 실적 대비 0.3%p 상향	[(경품가이드 준수율+허위·과장 광고 가이드준수율)/2] 100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③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Ⅱ-1-③)

□ 추진배경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 확대, 불공정행위 조사·제재를 통한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 피해 방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지원금 제도 개편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유도
 - 추가지원금 확대, 단말기 자급제 현황 실태점검 등 이용자 편의증진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지원(연중)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23.4월)
 -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 운영 현황 점검('23.3월)
- (시장 안정화) 불공정행위·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 조사 및 개선 활동 연중 실시
 -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이용자 차별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상시 조사 및 제재(연중)
 -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현장 계도 강화(연중)
- (신유형 불공정행위 대응)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전승낙제 도입('23.9월)

- 알뜰폰 가입 시 제공하는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23.9월)
- 불·편법 유통점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 검토('23.12월)
-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23.12월)
- (이)용자 편의 증진)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및 단말기 가격 비교 홈페이지 개편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편의를 확대
-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민관협의회 운영('23.6월)
- 휴대폰 데이터 유출 문제 개선을 위한 유통망의 데이터 취급·처리 관련 자율개선 방안 마련('23.9월)
- 정보 제공 확대 등을 위한 단말기 가격비교 홈페이지 개편('23.9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 운영 현황점검	'23.3월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민관협의회 분과회의 운영	'23.3월	
2/4분기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23.4월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민관협의회 전체 대면회의 개최	'23.5월	
	알뜰폰 시장 사전승낙제 도입 관련 연구반 운영	'23.6월	
	알뜰폰 경품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3.6월	
3/4분기	허위·과장 광고 사례 분석 및 연구반 운영	'23.9월	
	유통망의 데이터 취급·처리 관련 자율개선 방안 마련	'23.9월	
	정보 제공 확대 등을 위한 단말기 가격비교 홈페이지 개편	'23.9월	
	알뜰폰 시장 사전승낙제 도입	'23.9월	
	알뜰폰 경품 가이드라인 마련	'23.9월	
4/4분기	불·편법 유통점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 검토	'23.12월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23.12월	
연중	단통법 위반 사항에 대한 상시 조사 및 제제 실시	'23년 연중	
	신규 단말기 출시 등 시장 과열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활동	'23년 연중	
	단말기유통법 개정 관련 입법지원	'23년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 단말기 불법 지원금 등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해소,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등 통신비 경감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 이해관계자(통신사업자)

-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유통점 등

□ 기대효과

-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I -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	일반회계	20.85 (85.05)	23.50 (86.28)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302)		20.85	23.50
-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14.97	15.62
-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 비교		0.99	0.9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지수	-	-	신규	70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제도개선 추진과 상시적 시장 대응을 위한 상시조사체계 운영을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시장 개선 지표가 적극 반영되도록 함	$\{(①X0.5)+(②X0.2)+(③X0.3)\}$ ※①(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준수 건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총 건수)×100 ② 정책제도개선 건수 2건 ③(상시조사 실시 건수/ 상시조사 대상 건수) X 100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II-1-④)

□ 추진배경

- AI·메타버스·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피해양상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이용자 교육 강화 필요
- 통신서비스 이용자 불편사항의 선제적 발굴·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 불편 해소 필요
-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 계층별 맞춤형 교육,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정보제공을 통한 이용자 역량 제고
 - 계층별 교육 협력기관 및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확대하여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여건에 따른 제약이 덜한 온라인 전용 교육 시스템 운영과 다양한 교보재 제작으로 풍부한 교육환경 제공
 - 최신 통신금융사기 피해사례를 반영한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대국민 홍보 강화
 - 급변하는 통신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라 건전하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이용자보호 행사 개최
 - 이용자 사용 빈도가 높은 주요 앱의 무선데이터 소모량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데이터 이용 유도
- (모바일 앱 이용자보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알기 쉬운 사례로 제시하는 내용의 안내서를 마련하고, 홍보·배포함으로써 모바일 앱 이용자 권리 증진 및 피해 예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9(앱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신설('22.3월)

** 주요 내용 :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정보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 이용자가 불만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결제 관련 주요사항 고지 등

- (제도 개선) 통신서비스 이용자 불편사항의 선제적 발굴 및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개선 등의 지속 추진으로 국민 불편 해소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 서비스 및 사업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평가방안 마련
 - 이용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에 적합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체계 마련
-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기간·부가통신 사업자별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점검 및 사실조사, 피해구제 기준 이행 여부 점검
 -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설명회 실시
 - 비필수 삭제제한 선탑재앱 모니터링 강화 및 필요시 행정지도 등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사업자 컨설팅 실시	1~2월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 개최	3월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대상 앱 선정 및 측정 계획 수립	3월	
2/4분기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실시	4~9월	
	선탑재 앱 모니터링 실시	4~11월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효과조사 실시	5~11월	
	앱 마켓 사업자 이용자 보호 안내서 마련	6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서면·현장평가, 만족도 조사)	6~9월	
3/4분기	통신서비스 이용자주간 계획 및 운영 방안 수립	7월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보수교육 실시	8월	
	통신서비스 이용자주간 행사 피해예방 공모전 개최	8~10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집계 및 공개	9~10월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 분석 및 공개	9월	
4/4분기	통신서비스 이용자주간 행사 개최	11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개선 사항 자문회의 개최	12월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완료 및 성과 집계	12월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및 효과조사 결과 분석	12월	
연중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정보 제공	연중	
	불편광고(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모니터링 및 행정지도	연중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	연중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연중	
	통신장애 피해구제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중	
	모바일 앱 결제 관련 모니터링 실시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 노년층,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정보제공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역량강화

- (이해관계자) 통신사업자

-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확대, 이용자 피해구제 기준 공유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권익보호 기반 마련

□ 기대효과

- 정보취약계층 등 이용자 대상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 온라인 교육 시스템 운영,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한 이용자 역량 강화 및 권익 제고
- 대규모 디지털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정비를 통한 이용자 피해 선제적 예방
-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로 자유로운 통신서비스 이용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I -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	일반회계	16.68 (85.05) 16.68 16.06 0.62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301)		15.58 (15.58 14.96 0.62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률(%)	17.2	17.7	18.2	18.5	'22년도 실적(18.2%) 대비 0.3%p 상향한 18.5%로 설정 [(계층별 교육후 역량 점수 - 교육전 역량 점수) / 교육전 역량점수] x 100	교육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집계

성과목표 II-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 분류체계 일원화 및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도모
-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추진
- 대학생, 예비창업자 등 청년 스타트업 대상 창의적인 위치정보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휴대전화·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스팸 유통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
- 문자발송사업자를 통한 불법스팸 전송 비중의 지속적 증가로 문자 발송사업자 대상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추진
- 전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 실시, 범국민 참여형 캠페인 전개, 불법유해정보 차단 강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등 점검 강화
-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운영·관리 등 점검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공 DNA DB를 구축·확대하여 필터링 적용, 필터링 성능평가제도 고도화 등 추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대상 청소년유해광고 점검 등 청소년보호 조치 강화 및 태블릿 PC용 청소년보호SW 개발·보급 추진

- 민간 자율 가짜뉴스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 시민대상 교육·공모전 실시 및 가짜뉴스 자율규제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21 '22 '23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패트체크 교육 수료율(%)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8.9	최근 2년간('21~'22) 사업 실적 증가 감안, '23년 목표 설정	(교육수료인원/교육수강인원)×100	사업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 빅데이터, 자율주행, AI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사업화 요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위치정보 유출, 오용 및 남용에 대한 우려 증가
- 4차 산업혁명 및 5G 시대의 도래에 따른 스마트기기 이용 확산과 새로운 ICT 신기술 발달로 인한 불법유해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사회문제 대두
- 최근 다양한 사회적 범죄가 온라인 스팸으로 시작되는 경향에 따라 스팸은 '성가신 마케팅'이라는 인식을 넘어,
 - 불법도박 유도,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전갈취, 불법 의약품 판매, 불법 통장·계좌거래, 음란물 유통 등 '범죄의 창구'로 악용
- 문자발송사업자를 통한 불법스팸 전송 비중의 지속적 증가로 문자 발송사업자 단계별 대책 마련 추진
- 1인 미디어, SNS 등 온라인 소통 확대 및 디지털의 일상화로 허위 정보, 혐오표현, 정보편향 등 디지털 역기능 심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괴롭힘 등 직장 내 사이버폭력 예방 필요성 증가
-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이 카카오톡, SNS 등의 디지털공간에서 사이버 불링, 명예훼손 형태로 발생하는 사례 증가
- 특히, 청소년은 디지털폭력을 장난으로 인식하고 피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의 맞춤형 디지털윤리교육의 필요

□ 갈등요인

-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우,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사업자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위반하는 사례 발생
- 성인의 대다수(10명 중 9명)가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경험한 적이 없으며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함
※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폭력 가해동기로 성인 약 40%가 '재미나 장난, 스트레스 해소'를 꼽았으며 가해 이후 성인 약 46%가 '정당한 행동'으로 여긴다고 응답
- 사업자의 불법스팸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불법도박 유도,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전갈취, 불법 의약품 판매, 불법 통장·계좌거래, 음란물 유통 등 '범죄의 창구'로 악용
- 문자발송사업자 등록이 용이하고 진입장벽이 낮아 스팸 전송자 조치에도 서비스 이동을 통한 재발이 빈번

□ 갈등관리계획

- 사업자가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필요성과 기타 법적 의무 등을 숙지하여 자율적으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 실시
- 직장인을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통한 명예훼손, 디지털성폭력 및 2차 가해 방지 등 직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 추진

- 사이버폭력 형태의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전국민 참여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캠페인 추진
-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유발하는 불법스팸 발송을 억제하고 통신 사업자의 적극적인 스팸 대응 노력 강화 필요
- 스팸을 통한 도박, 대출사기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제 기관에 스팸데이터를 개방하고 불법스팸 전송자 규제 단속 강화,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스팸방지 인식제고 설명회 등 개최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위치정보의 안전성·활용 강화(II-2-①)

□ 추진배경

-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 인식 제고 등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 필요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운영 확대를 통해 불법스팸 유통을 최소화하고 스팸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해소 추진
- 디지털윤리 정책연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한 전 국민 디지털 역기능 대응 역량 향상 및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위치정보 정책 》

- (제도 개선)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 분류체계 일원화 및 위치정보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도모
 - 이용자 위치정보의 엄격한 보호 아래 신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안내 및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추진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차세대 신규 위치정보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서비스 기획·개발 단계에 있는 위치기반 스타트업을 모집하여 클라우드 인프라 등 서비스 개발 환경 및 서비스 고도화 컨설팅 지원
 - 중소·영세 기업 및 청년·스타트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 서비스를 선정하여 투자 유치, 비즈니스 네트워킹 확대 등 사업화 지원

- 국내·외 위치정보 관련 법·기술·서비스 동향 및 위치정보 산업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산업규모 파악 및 사업자대상 정보 제공
 - (긴급구조 강화)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 운영을 통해 긴급구조 요청자 등의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
- 위치정보 전달 체계상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품질측정 대상 지역 및 평가지표(측위 정확도, 성공률 등) 등을 객관적으로 선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위치정보 품질 제고 유도

《 불법스팸 대응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사업자 관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상 행정처분 의뢰,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수사의뢰 지원(연중)
- 휴대전화·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스팸 유통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
- 전화권유판매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스팸 전송자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연중)
- 사업자 대상 스팸 방지 인식제고 설명회 개최, 이용자 대상 스팸 피해 예방 교육 실시(연중)
- 도박중독·대출사기 등 국민의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규제 기관에 스팸 데이터 개방 및 시스템 운영

《 디지털윤리 교육·확산 추진 》

- 전 국민의 디지털 역기능 유해성 인지 및 올바른 디지털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유아, 청소년, 성인 등 대상별 디지털 이용행태를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 확대 실시

※ 연차별 디지털윤리 교육목표 : ('21년) 19만명 → ('22년) 20만명 → ('23년) 21만명

- (성인) 직장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등 파견
공공·민간기관 대상 디지털윤리 교육 추진

※ 성인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경험률은 9.6%로 청소년의 교육 경험률 89.0%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 (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 (청소년·학부모) 디지털불링 등 사이버폭력 형태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사이버폭력을 경시하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 사이버폭력 유형의 학교폭력이 최근 증가(10.5%, 13년 대비 2배)하였으며, 신체폭력 대비 장난 등으로 경시하는 학생, 학부모 인식개선 필요

-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의 필요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생활밀착형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추진
- 생활 속에서의 디지털윤리 실천을 위해 라디오, 옥외광고, 웹툰 등 디지털역기능 정책 홍보 강화 및 디지털윤리 홈페이지 등 운영
- 국민 참여형 캠페인 기획·추진 및 디지털윤리·사이버폭력 대응 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윤리체험관 운영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내·외 위치정보 산업 동향 보고서 발간 및 배포	3~12월	
	디지털윤리 교육 수요기관 모집 및 선정	1월~2월	
	'23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준수여부 현장점검 계획 수립·실시	2월~12월	
	디지털윤리 온·오프라인 홍보	2월~12월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 운영	3월~12월	
	이용자 대상 스팸피해 예방 교육 실시	3월~12월	
	'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및 공개	3월	
	본인확인기관 보완사항 점검	3월~12월	
	불법스팸 대응센터 운영 및 스팸신고 접수·처리	연중	
	스팸 데이터 개방을 통한 2차 피해 예방	연중	

2/4분기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추진	4월~12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추진	4월~6월	
	긴급구조 목적 위치정보 품질 측정 수행	4월~12월	
	'23년 상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6월	
	사업자 대상 상반기 스팸방지 인식제고 설명회 개최	6월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개최	6월~9월	
	디지털윤리 교육콘텐츠 개발	5월~12월	
	직장인 대상 디지털윤리 교육 실지	6월~12월	
3/4분기	공모전 선정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7월~12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대상 성과 조사 추진	8월~11월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윤리 교육 실시	7월~8월	
	디지털윤리 주간 캠페인 운영	8월	
	'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및 공개	9월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실시	9월~10월	
4/4분기	'23년 하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11월	
	사업자 대상 하반기 스팸방지 인식제고 설명회 개최	11월	
	디지털윤리대전 개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중소·영세 기업 및 청년·스타트업) 우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업화 지원, 온·오프라인 컨설팅 및 산업 동향정보 제공
- (전 국민) 위치정보의 품질 제고를 통해 국민에게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신속하고 안전한 긴급구조 서비스 제공, 디지털윤리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교사·직장인 등 전 국민의 디지털역기능 예방·대응 역량 강화 및 이용자 권리증진

- 이해관계자

- (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교육

□ 기대효과

- 위치정보 진입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변화된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여 위치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 기대
- 불법스팸 차단 대응 강화로 불법 스팸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현황 공개를 통한 통신사의 자발적인 스팸 감축 대응 유도 및 스팸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
- 이용자에게 불편과 짜증을 유발하고 정신적 피해, 시간낭비와 생산성 감소를 야기하는 불법스팸 발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박중독·불법 대출 사기 등 2차 범죄 피해 방지
-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 운영 및 국민참여형 홍보·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디지털윤리 의식 제고 및 선진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2	'23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I -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	일반회계	35.2 (전체단위 사업비) ⁴⁾ 2.29 32.91	35.2 (전체단위 사업비) ⁴⁾ 2.29 32.91
■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307)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309)			
②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3251)	기금	118.51 (전체단위 사업비) ⁴⁾ 11.81 11.7 32 63	120.29 (전체단위 사업비) ⁴⁾ 11.59 11.7 32 65
■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304)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기반 구축(311) ■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318) ■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30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위치정보 사업화 지원 만족도(점)	90.5	90	91.2	91	과거 실적 및 추세, 위치정보 사업화 지원 관련 외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 (신규 BM 발굴 사업화 지원 만족도×0.5) +(맞춤형 컨설팅 만족도×0.5)	사업화 지원 및 컨설팅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만족도 조사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통) (하향지표)	14	13	12	13	그간의 정책효과와 점차 불법스팸에 대한 국민인식* 등을 고려하여 실적 최근 3년간 평균(13통)으로 목표치 설정함 *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항 외에 불법도박, 대출 및 보이스피싱 등을 불법스팸으로 판단하는 국민눈높이 고려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각 1,500명 대상 1인당 월 평균 수신량 측정
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점)	88.2	88.8	89.5	90	최근 3년간 증가폭(0.5점)을 고려하여 0.5점 상향한 90점으로 목표치 산정 교육수혜자 대상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전문 조사업체 위탁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

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II-2-②)

□ 추진배경

-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점검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고 건강한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자율의 가짜뉴스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온라인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P2P 등)의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모니터링 및 상시점검* 강화
 - * AI기반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지원시스템 등 활용
- 인터넷사업자(부가통신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모니터링 및 상시점검 체계 구축
 - * 신고기능, 사전안내여부, 검색제한 조치, 게재제한 조치 등
- 방통위 주관 하에 '관계기관 협의회' 및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

《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 보호 》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 등 '정보통신망법' 상 위반사항 모니터링 및 점검
- ※ 신문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대상인 인터넷신문 등에 대해서도 청소년유해 광고 등 점검 추진

- 태블릿 PC에서도 청소년유해정보차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 S/W 기능 고도화 및 보급 확대 추진

《 민간 자율의 가짜뉴스 대응 역량 강화 》

- 국민 스스로 정보를 분별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청소년*·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정보 판별 교육 운영
 - * (청소년 팩트체크 전국대회)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 중·고등학교 간 연계를 통해 팩트체크 교육 운영 후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한 팩트체크 콘텐츠에 대해 시상
-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를 통한 가짜뉴스 인식 개선 추진
- 온라인 상 가짜뉴스에 대해 공적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규제를 통한 해결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 협의회 구성·운영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맞춤형 팩트체크 시민교육(청소년, 노인 등)	2월~3월	
	청소년 팩트체크 전국대회 운영학교 모집 및 선정	3월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수합 및 내용 점검	1월~5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자료 수정 및 보완	3월~6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	3월	
	디지털성범죄물 대응 강화 관계부처 실무자 협의회 개최	3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조치(1분기)	3월	
2/4분기	맞춤형 팩트체크 시민교육(청소년, 노인 등)	4월~6월	
	허위정보 인식개선 공모전	6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실태점검	4월~6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투명성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6월~12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사업자 선별 및 지정안내	4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조치(2분기)	6월	
	청소년보호SW 고도화(태블릿pc용 유해정보차단, 앱 통합개발)	4월~10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3/4분기	가짜뉴스 자율규제 협의회 발족	7월	
	맞춤형 팩트체크 시민교육(청소년, 노인 등)	7월~9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실태점검	7월~9월	
	사전조치의무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실태점검	7월~9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조치(3분기)	9월	
4/4분기	맞춤형 팩트체크 시민교육(청소년, 노인 등)	10월~12월	
	청소년 팩트체크 전국대회 결과 발표	12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실태점검	10월~12월	
	사전조치의무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실태점검	10월~12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 현장 점검 실시	11월~12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조치(4분기)	12월	
연중	불법음란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연중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연중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기술(DNA 필터링 시스템) 성능평가 수행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유아·초등, 청소년, 학부모 등 전 국민,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 기대효과

- 웹하드 사이트 상 건전하고 적법한 콘텐츠 유통 및 이용환경 구축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환경 조성
- 시민의 정보판별 능력 향상 및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한 범사회적 가짜뉴스 대응역량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 구축(I-2-일반재정①)			
①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 구축(3251)	기금	42.85 (186.01)	48.4 (190.92)
▪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306)		15.20	16.63
▪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314)		27.65	31.77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II-1-일반재정②)			
②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기금	17.4 (709.1)	6.1 (733.79)
▪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317)		17.4	6.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3 목표치 '20 '21 '22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불법정보 기술적 조치 개선율(%)	114.2	103.2	116.6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22년 기술적 조치 개선(삭제) 실적인 183,500건의 101%인 185,300건을 목표로 설정 o '22년도 실적인 81,542건의 101%인 82,300건을 불법음란정보 특징값 제공(방심위) 목표로 설정 	$[(\text{상시점검 등을 통한 기술적 조치 개선(차단) 건수/목표}) \times 0.5] \times 100 + [(\text{불법음란정보 특징값(해시, DNA) 방심위 제공건수/목표}) \times 0.5] \times 100$	실적보고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술 성능평가 수행률(%)	신규	95.9	98.7	97	o 성능평가 신청 대비 처리율을 전년 대비 2% 증가한 94%로 설정하고, 평가기술 고도화 건수 달성을 100%로 설정하여 최종 성과지표 목표치를 97%로 설정	$[\text{수행건수/신청건 수}] \times 100 + [\text{평가기술 고도화 건수}] \times 100$	사업결과보고서

전략목표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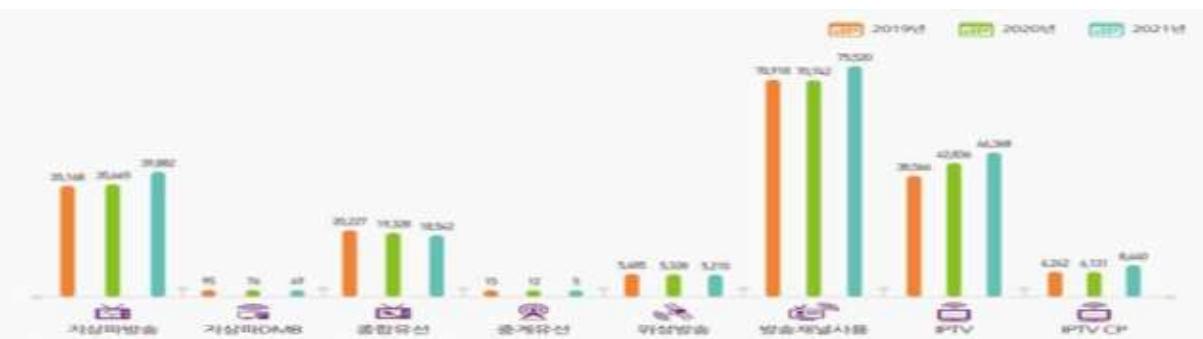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내 방송시장 규모는 '21년말 19.4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7.8% 증가하여 전년대비 증가폭 확대

< 방송매체별 매출 추이(억 원) >



- '21년도 전체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3조 1,2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9% 증가,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규제 완화 효과로 6년 만에 반등하였고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원 필요
- 국내 OTT서비스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환경을 고려, 해외 시장진입에 필수인 시장분석과 교류(네트워킹) 활동 등 필요
- 방송 콘텐츠 제작의 핵심 주체로서 그간 방송 한류를 견인해온 지상파 방송사들은 뉴미디어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콘텐츠 확대,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유통 채널 다변화 등 혁신을 추진 중이나,
- 지상파 방송이 과점적 지위를 점했던 당시에 도입된 방송광고·편성 등 규제들이 방송 제작·유통·소비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국경 없는 경쟁 시대에 적절한 대응 제한

- 방송사-외주 제작사 간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필요
- 방송의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예산 등 공적재원이 지원되는 공적채널에 대한 평가 필요
- 매체이용 환경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미디어 이용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필수매체 인식률(스마트폰 70%, TV 27.5%, '22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그간의 성과

- '10.29(이태원) 참사' 관련 중점 모니터링 등 방송내용 모니터링 및 심의·시정요구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방송내용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미디어환경 조성에 기여함
-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21.4월)을 통해 매체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가상광고 세부기준 및 협찬고지 규칙」을 개정 ('21.9월)하여 형식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송광고 규제 개선과 함께,
 - 협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허용범위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20.10월) 및 입법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에 기여
- 시·청각장애인 대상 맞춤형TV 보급,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및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제공, AI 기술 기반 음성-자막-수어 자동변환 시스템 개발 및 시범서비스 등으로 소외계층의 방송서비스 접근성 제고
-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 점검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통한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한 지역민영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 경제전문채널 등 16개사에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로 경각심 제고('22.11월)

-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문체부와 공동으로 실태조사 실시(매년),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연2회) 및 점검방식 개선('22.12월)
- 편성 자율성 및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규제 등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
 -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등을 완화하여 자유로운 방송 창작환경 조성('21.4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의무비율을 완화하여 자체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성 구현에 기여('21.6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
-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OTT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20년)하고, 해외진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해외 OTT시장·이용행태 조사를 실시('22년)

◇ 중점 추진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등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 및 막말·선정·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자체심의 역량 강화 등 고품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사항은 사업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도록 '원칙 협용-예외금지'의 규제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하여 방송 산업 및 콘텐츠 경쟁력 제고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매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신규 광고주 창출을 통해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추진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맞춤형 TV의 체계적 보급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방송매체를 이용·활용할 수 있는 권리 제고 및 디지털기기·서비스 기술 개발을 통한 미디어 접근성 강화

-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및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간 외주제작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심층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외주제작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사실조사, 시정명령,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리 제고
- 국제 OTT 포럼 개최 및 해외 OTT 시장분석·이용행태 조사를 통해 국내 OTT 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 토대 마련
-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확대 및 공적채널에 특화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공적채널 평가방안 마련
- 방송 편성규제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확보 및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의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

◇ 전략목표와 임무 간의 상관성

- 장애인 방송시청 접근성 제고,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방송 환경 조성 및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
- 방송광고·편성·외주제작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상생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여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
- 국내 OTT 사업자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작사들이 안정적으로 방송 콘텐츠를 제작·유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광고 제작 지원으로 방송광고 산업의 활성화 선순환 기반 조성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5	6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I.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방송수신기 시각·청각장애인 전체 누적보급률(%)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도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① 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	① 방송 및 방송 광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인식도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산업 발전 기반 구축률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① 외주제작시장 환경개선 만족도
	②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만족도 ② 방송광고 규제검토 및 개선

전략목표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1)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등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 및 막말·선정·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자체심의 역량 강화 등 고품격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방송 산업 활성화 및 콘텐츠 경쟁력 제고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매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신규 광고주 창출을 통해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추진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 수어) 품질 모니터링 실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 개발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
-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및 방송사-외주제작사간 외주 제작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심층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외주제작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국내 OTT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OTT 포럼 개최 및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 실시
-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를 확대하여 국가 예산 등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채널 대상으로 공적 기능 및 콘텐츠 기획·제작·편성에 대한 평가체계 방안 마련
- 방송 편성규제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확보와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의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
-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사실조사, 시정명령,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제고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22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조원)	16.5	17.3	17.7	18.0	19.4	23.4	'20~'22년 실적(과년도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 [¶] 의 연평균 증가율(3.9%) 적용	과년도 지상파방송 · 지상파DMB · 유선 방송 · 위성 방송 · 방송 채널 사용사업자의 방송 사업 매출액 합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3) 기타 : 해당 없음

성과목표 III-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1)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등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 및 막말·선정·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자체심의 역량 강화 등 고품격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 디지털 대전환, OTT 활성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따른 국민 관심행사 시청 매체 변화를 고려한 디지털 중계권 개념 도입방안 검토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 수어) 품질 모니터링 실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 개발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
-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사실조사, 시정명령,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방송수신기 시각·청각장애인 전체 누적보급률(%)	신규	37	38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보급률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전체 누적보급 대수/전체 시각·청각장애인 수)× 100	사업 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방송사의 시청률 경쟁 심화로 방송프로그램의 막말·선정·폭력 등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저하 우려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다수의 국민들이 OTT, 포털 등을 통해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하고 있음에도 디지털 매체에 대한 현 법·제도와 정책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한계점 분석 필요

- 방송사의 시청률 경쟁 심화로 방송프로그램의 막말·선정·폭력 등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저하 우려
- OTT를 통한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의 온라인 생중계가 확대되고 있어, 현재 방송에만 적용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의무를 OTT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 미디어 이용 환경이 인터넷·모바일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을 위해 기기 접근성 제고,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신기술 개발 등 기반 조성 필요

□ 갈등요인

-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 관련, 과도한 방송 내용 심의 및 제재로 표현의 자유 위축 및 방송프로그램 수준 저하 우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와 병행하여, 방송사 심의 책임자 회의 및 심의자료 공유 등을 통해 방송사의 규제 예측가능성 및 자체심의 역량 제고
-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 및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 등 장애인방송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시각·청각장애인의 동등한 방송접근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나,
 - 양적 확대에 부합하는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장애인방송 품질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유료방송사 가입자 포화 및 OTT사업자로의 가입자 이탈 상황 속에서 콘텐츠 사용 대가에 대한 방송사와 콘텐츠 공급자 간 갈등 시 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의 불리한 계약 강요 등 불공정 행위 증가 우려
 - 실태점검, 조사 등을 통한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여부 확인과 위반 시 제도 개선, 시정명령 등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III-1-①)

□ 추진배경

- 방송프로그램의 선정·폭력 등이 방송의 신뢰성을 저해함에 따라 심의규정 반복 위반 개선 등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필요
- 국내 제작 우수 방송 프로그램 등을 선정·시상함으로써 방송 제작인의 사기 진작 및 건전한 방송문화 확산 촉진
- OTT, 포털 등을 통한 국민관심행사 시청환경이 확대됨을 고려, 디지털 매체에 대한 현 법·제도와 정책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한계점 분석 필요

< 국정기조와 연계성 >

- **(주요업무계획)** 3. 디지털 이용자 보호 강화 – 방송통신 불법유해정보 등 대응체계 정립
 -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의견수렴 의무절차 신설 및 아동·청소년 연예인 관련 종사자 대상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프로그램 공정성 강화) 방송심의 모니터링 강화,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조치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연중)
- (미디어 심의체계 효율화) 디지털 환경 및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자율 심의 체계 도입 방안 논의
 - 해외주요국 자율심의 체계, 미디어 심의기구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는 등 민간 중심의 자율 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연구 추진
-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강화)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의견수렴 의무절차 신설(가이드라인 개정, '23.12월) 및 아동·청소년 연예인 관련 종사자 대상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추진

- (방송의 품격 제고)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사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상파, 종편·보도PP 등 주요 방송사와 협약을 통해 언어순화 자막 고지 등 방송언어 사용 환경 개선 추진(5/10월)
 - 방송심의 규정 반복 위반 현황 조사 및 방송심의 사례집 제작·배포 등 방송사의 자체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방송사의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제작 지원 등을 통해 방송언어 순화 지원(연중)
- (우수 프로그램 시상)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등 사회·문화발전, 한류확산, OTT 발전 등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을 통해 방송 제작 활성화 및 건전한 방송문화 확산 촉진(23.6~8월 예정)
- (보편적 시청권 개선) 디지털 중계권 개념 관련 해외 사례와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연구 추진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추진 ○ 작품접수, 예본심 심사위원회 구성 및 국민심사단 모집 및 운영 	~23.3월	
2/4분기	방송심의 규정 반복위반 현황조사 및 조치	'23.5월	방심위
	방송언어순화 자막고지 등 캠페인 실시(상반기)	'23.5월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23.6~8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상반기)	상반기	방심위
3/4분기	방심위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제작 지원	'23.10월	방심위
4/4분기	방송언어순화 자막고지 등 캠페인 실시(하반기)	'23.10월	
	디지털 중계권 개념 도입방안 마련 및 연구보고서 발간	'23.12월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23.12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하반기)	하반기	방심위
연중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시상(월별 5~6편)	매월	방심위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방송심의 실효성 확보	연중	방심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사업자) 방송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합리적·자율적인 판단 하에, 품격 있고 창의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 (시청자) 막말·선정·폭력 등이 완화된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시청, 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확대

○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OTT사업자) 방송제작 당사자 및 규제 대상 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내용 심의 기관

□ 기대효과

-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 방송언어 사용환경 개선 활동, 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청자의 미디어 복지 제고 및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2	'23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1-일반재정)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361.39 (709.10)	368.24 (733.7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310)	방송통신	361.39	368.24
② 방송콘텐츠 경쟁력 확보(3134)	발전기금	3.10 (82.55)	3.10 (83.65)
▪ 방송콘텐츠 기반강화(301)		3.10	3.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21 '22 '23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방송프로그램의 품격향상도(점)	63.8	66.3	67.0	66.4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치(65.7)와 전년도 실적치(67.0)를 감안하여 '23년 목표점수를 66.4점으로 설정 * 3년간 실적 평균치 : 65.7 * '22년도 실적치 : 67.0	[(방송심의활동 효과 만족도 3개 항목 각 7점척도 평균 점수) / 7] × 100 * 3개 항목 : ① 프로그램 품질저하 방지기여도 ② 규정위반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수준의 적절성 ③ 방송관련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만족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청자, 방송업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III-1-②)

□ 추진배경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미디어에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기접근성 제고,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및 기술 개발을 통해 미디어 이용 환경 보장

< 국정기조와 연계성 >

- (국정과제 59-2)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플랫폼 고도화, 신기술 개발 등 추진

- (주요업무계획) 2-3.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격차 없이 미디어에 접근·활용하기 위한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확대 등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실시간·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방송물(연 4,000여 편) 및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콘텐츠(연 40여 편) 제작·보급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시청편의 제공
 - 장애인방송의 양적 확대에 부합하는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 방안 마련
-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편의를 위한 맞춤형 TV 개발 및 보급 확대(연 20,000대), 유료방송 셋톱박스 장애인방송 특화기능 탑재 기술 개발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실수요자(청각장애인) 대상 시범서비스 운영 등 인터넷 미디어 접근성 제고
-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자 공고	2월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대상 방송사업자 선정	3월	
2/4분기	장애인방송 품질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수행기관 선정	4월	
	유료방송 셋톱박스 장애인방송 특화기능 기술 개발 사업자 선정	5월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 접수	5~6월	
3/4분기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시범서비스 운영 및 개선의견 조사	7~12월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대상자 선정 및 보급	7~12월	
4/4분기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및 장애인방송 만족도 조사	11~12월	
	유료방송 셋톱박스 장애인방송 특화기능 기술 개발	12월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시범서비스 운영 및 개선의견 조사	10~12월	
	장애인방송 인식개선 홍보 영상 제작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미디어 소외계층) 미디어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을 보장

○ 이해관계집단

- (장애인 유관단체) 시각·청각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미디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 장애인방송 관련 정책방향 마련에 기여
- (방송사업자)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방송(폐쇄자막·한국 수어·화면해설) 의무편성 시행

□ 기대효과

-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및 이용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미디어 세상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②)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방송통신 발전기금	135.68 (709.10) 135.68
▪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308)		157.18 (733.79) 157.1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점)	92.5	94.1	94.5	95	최근 3년간('20~'22년) 실적 증가 감안, '23년 목표 상향 $(\text{자막방송만족도} \times 0.87) + (\text{수어방송만족도} \times 0.04) +$ $(\text{화면해설방송만족도} \times 0.09)$	(자막방송만족도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결과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III-1-③)

□ 추진배경

- SO의 점유율 하락과 IPTV 점유율 상승 등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확보경쟁이 심화되면서 과열경쟁으로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가능성 증대
- 방송시장에서의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환경조성 필요
 - 플랫폼 사업자-콘텐츠 사업자 간, 홈쇼핑사업자-납품업자 간 불공정 행위 등을 시정하여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상품에 대한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영업행위 근절로 이용자 권익보호
- 방송시장의 경쟁심화에 따라 방송사업자간의 분쟁* 발생 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공정경쟁 기반 조성
 - * 사업자 간 주요 분쟁 사례 : 방송채널 송출 계약, 프로그램 사용료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에 대해 점검·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연중)
- 유료방송사업자의 기존 가입자 접수민원 분석을 통해 유형별 주요 이슈를 발굴·공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추진(연중)
 - ※ 방통위, 유료방송사, 협회, 재단이 참여하는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운영
- 인수·합병에 따른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프로그램 사용료 실태점검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점검
- 라디오 보험 상담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시청자 권리 보호(~5월)

-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를 통해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부과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업계·학계·이해관계자 등의 활용을 지원(~6월)
- 홈쇼핑방송 시장 등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을 위해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간의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6월)
- 지상파·종편PP의 건강정보프로그램 방송시간대에 홈쇼핑방송에서 관련 상품의 판매여부 등의 지상파·종편-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파악(~7월)
- 방송시장 매출 정체하는 등 유료방송사(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와 지상파 및 콘텐츠사업자 간 계약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 간 조정 및 합의 권고를 통해 방송 분쟁 해결(연중)
- 방송시장에서의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지행위 세부유형 개선 등 관련 법령(방송법·IPTV법) 개정안 마련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유료방송 해지·변경신청 대리인의 제출 서류 개선 시행	'23.4월	
	라디오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방송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	'23.5월	
	홈쇼핑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23.6월	
	방송광고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23.6월	
	유료방송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23.6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23.6월	
3/4분기	지상파·종편PP-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파악	'23.7월	
4/4분기	이용자 권리보호 인포그래픽 제작 및 배포	'23.9월	
	금지행위 세부유형 확대 등 방송·IPTV법령 개정안 마련	'23.12월	
연중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연중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연중	
	유료방송사 접수민원 분석(4회)	분기별 1회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4회)	분기별 1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이용자)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
- (방송사업자 등)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근절, 분쟁조정 등 사업자간 상생 환경 조성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정부, 학계 및 산업계 등)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자료를 통해 방송 시장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방송정책 수립·연구 등에 활용

○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 등) 방송법, IPTV법,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금지행위 규제 대상
-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시장 동향 및 민원분석 등 방송시장 조사 관련 업무 지원

□ 기대효과

- 불공정행위 시정, 제도개선,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
-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통해 중소·영세 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권리보호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공표하여 방송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등 방송정책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방송시장의 규모 및 거래현황 정보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2	'23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II-1-일반재정②)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방송통신 발전기금	6.22 (709.10)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지원(312)		6.22 (733.7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20 '21 '23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 인식도(점)	신규 70.0	73.6	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사업자 유형별* 불공정행위 개선도 평균 (*유료방송사, PP, 지상파 방송사, 광고대행사, 미디어렙사) o 거래계약 상대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관행 개선도, 사후 규제 정책 실효성, 정책홍보 노력도 등에 대한 평가 	리커트 5점 척도 (0점에서 100점 까지 구간별 25점씩 상향)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전문조사기관 설문 조사결과

성과목표 III-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1) 주요 내용

-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방송 산업 활성화 및 콘텐츠 경쟁력 제고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매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신규 광고주 창출을 통해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추진
- 외주제작 거래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이행점검 실시
- 방송 편성규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분과회의를 운영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을 위한 기반으로 국제 OTT 포럼 개최 및 해외 OTT 시장분석·이용행태 조사 실시
- 공적채널 평가 방안 마련을 통해 대상 채널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기획·제작·편성의 평가항목 개발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방송산업 발전 기반 구축도(점)	신규	80.2	각 구성요소별 '23년 목표치의 산술평균값을 목표로 책정 ①외주제작 정책 만족도: 85.5 ※ 최근 3년의 실적치를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상향 ②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만족도: 75.0(%)	[(①외주제작 정책 만족도 + ②(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 사업 전반적 만족도 x0.5)+(소상공인의 지원사업 전반적 만족도x0.5)] / 2		사업효과평가 조사결과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22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21년 방송사업자의 방송 사업 매출액 합계는 19.4조 원으로 전년(18조 원) 대비 7.8% 성장

※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 : ('14) 4.9% → ('16) 3.8% → ('18) 4.8% → ('20) 1.9% → ('21) 7.8%

< 방송매체별 방송사업 매출액 추이(단위: 억 원) >



- 또한, '21년도 전체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3조 1,2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9% 증가,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규제 완화효과로 6년 만에 반등하는바,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 방송콘텐츠 제작의 핵심주체로서 그간 방송 한류를 견인해 온 방송사들은 뉴미디어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콘텐츠 확대,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유통 채널 다변화 등 혁신을 추진 중이나,
- 방송의 매체영향력이 과점적 지위를 점했던 당시에 도입된 방송 광고·편성 등의 규제들이 방송 제작·유통·소비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국경 없는 경쟁 시대에 적절한 대응에 한계
- 미디어 플랫폼의 중심이 전통적인 방송 매체에서 OTT로 이동하고 글로벌 OTT의 국내 진출 등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필요

-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한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 확인 및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 콘텐츠 인기가 계속되고 있어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 가능성 확대

※ 국내 OTT 이용률 : ('17년) 36.1% → ('20년) 66.3% → ('21년) 69.5% → ('22년) 72.0%

<국내 OTT사업자 글로벌 진출 시동 현황 >

- (웨이브) 미주지역 콘텐츠 플랫폼 코코와(KOCOWA) 인수 또한, 미국 케이블 채널 HBO와 제휴를 맺고 주요 콘텐츠를 독점 공급하며, 미국·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 주요 미주지역 약 30개국에 콘텐츠 제공
- (티빙) '22.6월 파라마운트와 협력, 오리지널 시리즈 '욘더'를 파라마운트+를 통해 전세계 전파, '24년 미국 진출 목표

※ 출처 : OTT, 해외진출·콘텐츠 경쟁력 확대로 생존('23.3.3, ZDNet korea)

□ 갈등요인

- 방송광고 규제 개선은 방송사업자의 고품질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나,
 - 방송 분야 규제 개선으로 시청률 등 방송의 매체력 증가에 따른 타 매체 이용 및 광고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청권 침해 등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저하 우려도 존재
 - 관련 법령 개정 시 방송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 설득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엄중한 사후규제 병행
- 벤처 등 인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을 지원하므로 지원 대상이 제한되며, 중소기업이 방송광고 제작 후 광고 송출비에 대한 부담으로 방송광고 활용에 한계
 - * 산업부·중기부 내부 기준에 따라 관련 협회 등에서 중소기업으로 인증
-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방송광고 관련 교육을 통해 여러 미디어렙의 송출비 할인 제도 등을 소개하여 제작한 방송광고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

- 범부처 합동으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수립 ('17.12월) 이후 표준계약서 사용률 증가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방송거래 불공정 관행 개선 필요
 - 외주제작 거래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실태조사와 전문가·사업자·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점검방식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유도
- 문체부, 과기정통부에 콘텐츠 산업육성 지원 사업이 편중되어 있어 방통위 차원의 OTT 플랫폼 지원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4) 기타

□ 광고매체시장 환경 변화

- '21년 총광고비는 15조 5,453억 원(GDP대비 0.75%)으로 전체 광고 매출액은 지속 성장 중
 - 온라인광고는 '15년 방송광고를 역전한 이후 성장세 지속, 점유율을 높여 '21년에는 9조 2,846억 원으로 전체 광고시장의 59.7% 점유
 - 반면, 방송광고는 '15년 이래 지속적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21년 중간광고 허용 등 규제완화로 전년 대비 14.99% 증가, 6년 만에 반등

< 2021년 국내 매체별 총광고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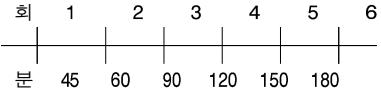
구분	매체	광고비(억)		성장률(%)	구성비(%)
		'20	'21		
방송 (DMB 제외)	지상파	10,013	12,097	20.8	7.8
	유료방송	17,159	19,150	11.6	12.3
	방송계	27,172	31,247	15	20.1
인쇄		19,200	19,315	0.6	12.4
온라인·모바일		75,284	92,846	23.3	59.7
기타 (옥외/교통 등)		11,877	12,045	1.4	7.7
총계		137,097	155,453	13.4	100.0

※ 출처 : (방송)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방송 이외)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 방송광고 규제 현황(방송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 2,3)

- (개요) 열거된 7가지*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이 금지되어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방송법」 개정 필요
 - * (1) 프로그램광고, (2) 중간광고, (3) 토막광고, (4) 자막광고, (5) 시보광고, (6) 가상광고, (7) 간접광고
 - 또한, 방송광고 유형별로 크기·횟수·장르 등 복잡한 규제 적용
- (주요경과) '73년부터 칸막이식 규제가 도입되었으며, 방송광고 총량 규제 완화('15년),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21년) 등 매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광고규제완화 정책 추진 중

< 방송광고 규제현황 >

유형	정의	현행 규제
프로그램광고	방송프로그램의 전후에 편성되는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20/100 (편성시간당 일평균 17/100) ※ 중간, 자막, 시보 광고 포함
토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프로그램 광고방송 자막고지 (1/64이상)
시보광고	현재시간 고지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
중간광고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횟수, 매회 광고 시간 1분 이내 <div style="text-align: center;">  <p>※ 중간광고 시작 전 자막(1/32)·음성으로 고지</p> </div>
자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업자 명칭 또는 프로그램 안내 고지시 · 화면 1/4이내
가상광고	프로그램에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가상이미지를 삽입하는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락, 스포츠, 스포츠 보도 (어린이 주시청 대상 프로그램 금지) · 프로그램 7/100, 화면 1/4 이내 · 가상광고 포함여부 고지(1/16), 스포츠 중계시 선수 등 가림 금지 · 음성, 음향 금지
간접광고	방송프로그램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락, 교양 장르(어린이 주시청대상 프로그램 금지) · 프로그램 7/100, 화면 1/4 이내 · 구매언급 금지 · 간접광고 포함여부 고지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III-2-①)

□ 추진배경 (목적)

- 범부처 합동으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수립 (17.12월) 이후 표준계약서 사용률 증가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방송거래 불공정 관행 개선 필요
 - 외주제작 거래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실태조사와 전문가·사업자·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점검방식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유도
- 과거 지상파 독과점 상황에서 도입된 낡은 편성규제가 지속되어 시장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어렵고 방송산업 위기 극복의 장애로 작용
 - 방송환경 변화, 규제 도입취지, 실효성을 고려하여 편성의 자율성과 방송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편성규제 개선 필요

— < 국정기조와 연계성 – 방송외주제작 환경 개선 및 편성규제 합리화 > —

- (국정과제 27-2)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
 - 방송 등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규제형평성 및 정책일관성 제고
 -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20.6.)
 - (1-①) 플랫폼 혁신을 위한 최소규제 추진
 - (방송시장 규제 완화) 방송의 자율적 구조개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유율·요금·편성 등 규제 폐지·완화
 - (4-②-①) 공정한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
 - (불공정관행 개선)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 부과, 이행 독려, 합동 실태점검, 법률지원 추진
 - (②-②)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립
 -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편성 자율성 및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 편성규제 개선 법안 마련(12월)
- ※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비율 매체별 일원화,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 등

- 해외 OTT가 막강한 자본력을 활용하여 국내 외주제작시장에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방송 콘텐츠 시장이 해외 OTT에 종속될 우려가 있음
- OTT 성장을 견인해 온 지상파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 한류의 세계 재도약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미디어 플랫폼의 중심이 전통적인 방송 매체에서 OTT로 이동하고 글로벌 OTT의 국내 영향력 확대 등에 대응할 경쟁력 확보 필요
-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

————— < 국정기조와 연계성 -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 ————

- (국정과제 27-3)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 ICT 기반 경쟁력 있는 OTT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
 - (OTT 국제행사) OTT 국제포럼 등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 시 필요한 현지 네트워크 형성, 투자유치 등 지원
- (부처업무계획)
 - (①-③)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전략 추진(미디어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
 - 제2회 국제 OTT 포럼 개최 및 국내 OTT 전략적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분석·이용행태조사 대상 국가 확대(3개국→4개국)

- 방송의 공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예산 등 공적재원이 지원되는 공적채널에 대한 역량 평가 실시 필요

————— < 국정기조와 연계성 - 공적채널 제작역량 평가 > ————

- (국정과제 6-4)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
 - 공적 채널 콘텐츠의 공익성·공적역할 등 공적 기능에 대한 평가 시행
- (부처업무계획)
 - (②-①)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공적채널 평가)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해당 채널의 콘텐츠 기획·제작·편성 등에 대한 평가항목 신규 개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외주제작 환경 개선 및 편성규제 합리화 >

- 표준계약서 사용률, 권리 배분 등 방송사-외주사간 외주 계약 실태 및 거래 관행 관련 문체부 공동 실태조사 실시
- 지상파·종편PP 대상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상생협의체 운영 결과 등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연 2회 이행점검 실시
- 넷플릭스·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확대·재편된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편성규제를 혁신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 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편성 자율권 확보를 위해 오락프로그램, 1개국 수입물,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제도 등 방송 편성규제 합리화

<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

-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 사업자가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내 OTT 사업자가 해외진출 가능성 및 진출 시 현지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외 조사 국가를 확대, OTT 시장분석 및 이용행태 조사를 실시하여 전략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방송의 공적 책무에 대한 평가제도 강화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확대하여 공적 채널의 공익성·공적역할 등 공적 기능에 대한 평가 시행방안 마련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송편성규제 개선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 1분과회의 운영	'23.3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 개최	'23.3월	
2/4분기	방송편성규제 개선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 2분과회의 운영	'23.5월	
	해외 OTT 시장 및 이용행태 조사 기획 ('22년 하반기 실적)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23.4월 '23.3~6월	
3/4분기	방송편성규제 개선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 3분과회의 운영	'23.7월	
	2023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기본계획 수립	'23.8월	
	해외 OTT 시장 및 이용행태 조사	'23.5~9월	
4/4분기	국제 OTT 포럼 개최	'23.11월	
	('23년 상반기 실적)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23.8~11월	
	방송 편성규제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마련	'23.12월	
	해외 OTT 시장 및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 발간	'23.12월	
	공적채널 평가방안 마련	'23.12월	
	외주제작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외주제작 환경 개선 및 편성규제 합리화 >

- (외주제작사)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정과 이행점검 실시로 투명하고 공정한 방송 거래 시장 조성
- (방송사업자) 편성규제 개선으로 규제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편성 자율성이 확대,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의 콘텐츠 경쟁력이 강화

<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

- (국내 OTT 사업자 및 제작사) 국내 OTT 경쟁력 활성화 관련 정책을 통해 국내 OTT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국내 OTT를 활용한 콘텐츠의 안정적 제작·유통 여건 조성

- (OTT 이용자) 국내 OTT 시장과 콘텐츠의 안정적 제작·유통을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OTT 콘텐츠 이용 가능

< 방송의 공적 책무에 대한 평가제도 강화 >

- (시청자) 공적 재원이 투입된 채널에 대한 평가가 도입되면 전 국민 (시청자)들은 공익적·경쟁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이해관계자

< 방송외주제작 환경 개선 및 편성규제 합리화 >

- (외주제작사)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실시로 투명하고 공정한 방송 거래 시장 조성

< 방송의 공적 책무에 대한 평가제도 강화 >

- (채널사업자) 공적기능 및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에 부합하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

- (국내 OTT 사업자 및 제작사) 국내 OTT 경쟁력 활성화 관련 정책을 통해 국내 OTT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국내 OTT에 대한 콘텐츠의 안정적 제작·유통 여건 조성

□ 기대효과

- 콘텐츠 제작생태계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편성규제 개선으로 국내 방송사업자가 글로벌 OTT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자유로운 창작환경 구축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공정한 외주제작 거래 개선 및 상생·협력을 통해 방송시장 외주제작 환경 조성에 기여

- 국제 OTT포럼, 해외 OTT 시장 및 이용행태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외 OTT사업자간 협업·교류를 통해 국내 OTT산업 활성화에 기여
-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채널의 공적 기능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적채널의 공익성·공공성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2	'23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②)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3 (709.10)	3 (733.79)
■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313)	3	3
②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3134)	11.49 (82.55)	14.29 (83.65)
■ 방송평가기반조성(302)	7.99	8.29
■ OTT산업 경쟁력 강화(341)	3.5	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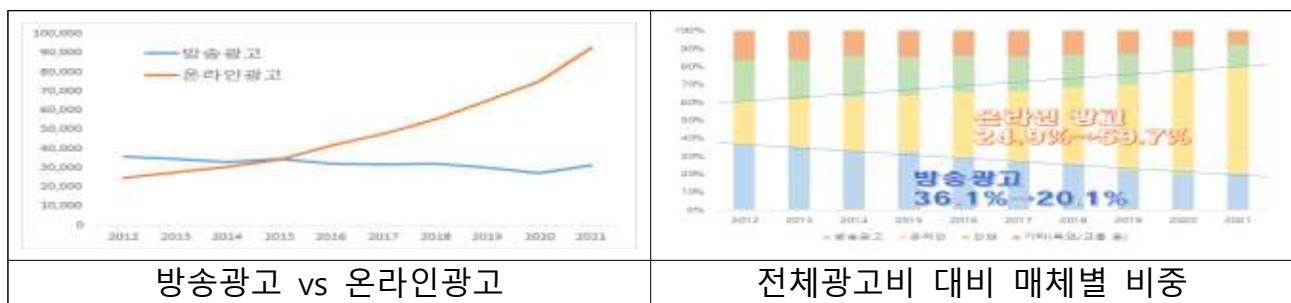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외주제작시장 환경개선 만족도(점)	83.8	84.4	85.2	85.5	최근 3년의 실적치를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상향	외주제작 정책 만족도 조사 1 차·2차 평균 * 5점 척도 평균을 100점 만점 환산

②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III-2-②)

□ 추진배경 (목적)

-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매체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매체광고시장 역전, 제작비 급증 등으로 방송사업자의 제작 여건 악화
 - 규제가 거의 없는 온라인 광고와 달리 방송광고는 '73년 만들어진 칸막이식 광고규제가 유지되어 방송광고 산업 성장 제한

< 지난 10년간 방송 VS 온라인 광고매출 변화 (12~'21) >



- 상품의 우수성, 기술력 등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송광고가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이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반면, 대기업은 방송광고 외에 모바일·인터넷 광고를 확대함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있어,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유도하고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추진 필요

< 국정기조와 연계성(1) – 방송광고 제도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 (국정과제 27-2)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혁신
 - 예외적인 금지사항 외 원칙적으로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면 개편 추진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과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광고 제작비·지역방송 송출비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부처업무계획 1) 미디어콘텐츠 성장 재원 확충
 -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사항은 사업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예외 금지' 체계* 도입 검토 및 추진(방송법 개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광고 제도개선 >

-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및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을 위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추진
 - 매체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허용-예외금지 체계로 전환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마련
 - 「방송법」 개정안 마련 시, 방송광고 규제 완화에 따른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자영향평가 도입' 및 '사후규제체계 강화' 병행
- 방송의 지역성·다양성 확보 및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결합판매 지원 고시 개선 추진
 - 미디어렙사 지원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범위 및 각 사별 지원규모결정 기준, 신규 결합판매 지원 대상사업자 지원규모 산정방식 등 마련

<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

- 우수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으나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형 중소기업 47개사(TV 31개사, 라디오 16개사), 소상공인 177개사를 대상으로 방송광고 제작·송출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원 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연간 기본계획 수립	'23.1월~2월	
	1차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23.2월~3월	
	1차 지원기업 방송광고 지원 및 컨설팅 제공	'23.3월~	
2/4분기	2차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23.6월~7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관련 입법안 의견 수렴	'23.4~6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관련 연구반 운영	'23.4월~	
3/4분기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3.7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3.7~9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 마련	'23.9월~	
4/4분기	효과평가 계획 수립 및 효과평가 실시	'23.12월~	'24.2월 완료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관련 방송법 개정안 마련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방송광고 제도개선>

- (방송사 및 광고주)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여 광고효과를 확대할 수 있으며, 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에 기여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방송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및 제품의 인지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성장 기대
- (광고대행사 및 제작사) 혁신형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광고 제작에 참여하는 대행사 및 제작사의 시장 확대 예상
- (방송사) 기존 광고주 이외에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광고주로 유입되어 광고매출 증가를 통한 재원확보로 양질의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 이해관계자

<방송광고 제도개선>

- (시민단체) 방송광고 규제 완화로 인한 시청권 침해 등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저하 우려
- (방송 외 타 매체 사업자) 방송 분야 규제 개선으로 시청률 등 방송의 매체력 증가에 따른 타 매체 이용 및 광고시장 악영향 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 (미인증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 벤처 등 인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대효과

-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통해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충하고,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 복지를 증진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지원 기업의 성장에 기여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광고주로서 방송광고시장에 진입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1-일반재정④)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3134)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315)	방송통신 발전기금	37.23 (82.55)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340)		15.91 21.32
		37.23 (83.65) 15.91 21.3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만족도(%)	신규	75.0	본 지표는 신규 지표로서 추세치 변동을 예상하기 힘든 점, 유사 지표의 초기 목표치를 고려하여 보통(75%) 수준의 목표 설정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사업 전반적 만족도x0.5)+ (소상공인의 지원사업 전반적 만족도x0.5)	사업효과평가 조사결과
방송광고 규제 검토 및 개선(건)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건수 포함	신규 신규 신규	4	반기당 1회 이상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소관법률의 규제재검토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	이해관계자 회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건 규제재검토 및 규제개선 건	이해관계자 회의 공문 및 결과보고서, 규제개선안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실현을 위하여 기관내·외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23년 정부업무평가 주요내용인 국정과제, 정부혁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과 행정관리역량 강화 등 각종 시책 추진
- 방송통신 정책 수립 및 규제 관련 외국 정부·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와 K-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등을 위해 교류협력 활동 지원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업무 관련 전문 교육과정 제공
-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미디어 산업구조 및 이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구 미디어 간 법체계 일관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윤리 기반 마련, 합리적인 미디어 정책 추진체계 및 미래비전 수립이 필요
- 미디어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방송통신 정책과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중요한 상황
 -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송통신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국민 정책홍보 및 소통 활성화 추진

◇ 그간의 성과

- (정부혁신) 실무매뉴얼 및 비상근무 실시요령 마련 등 부서별 혁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실천하고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 가족초청 행사, MZ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방통위 어벤져스' 운영을 통해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직장문화 조성

- (정보보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통한 침해 사고 대응능력 강화 및 정보시스템 보호
- (국제협력)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우수 방송프로그램 선정·시상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공동 제작 활성화와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및 제작비 지원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지원
- (미디어전략) OTT 등 신유형 미디어를 포함하여 미디어의 기능적 특성에 따른 정책목표 및 규율수단을 마련하고, 혈행 규제를 재검토·완화하여 미디어 산업 전반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정책방안 마련
- (규제개혁) 방송통신 분야의 낡은 규제 해소를 위해 관련 업계,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였고, 법령 정비를 통해 방송·통신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규제를 개선
- (정책 홍보) ▲기획 홍보, ▲현장소통, ▲정책자료집 제작 등을 통해 방송통신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활성화하고,
 - ▲정책브리핑, ▲주간홍보계획 배포 등 대언론 취재지원을 강화하여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를 활성화
- (온라인 홍보) 주요 정책의 전략적 홍보 추진 및 국민 친화형 콘텐츠 제작·화산으로 대국민 정책 이해도 확대

◇ 중점 추진내용

-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 및 주요업무계획의 원활한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국정과제 시스템 등을 통한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평가 등 추진
- 사회적 재난 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비상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충무계획 작성 및 보안점검 내실화
-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규제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OTT)」등 미디어 매체별로 분산된 규율체계를 포괄하고 미디어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법제(안) 및 미디어 정책 추진체계 마련
-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위한 규범체계 확립, 방송역사 100년 정립 및 미디어 미래비전 수립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 방송통신 분야 정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교류 추진과 K-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해 공동제작 협정 제작지원 및 공동제작 글로벌 콘퍼런스 개최 등 국제 교류 협력 활동 적극 지원
- 국민들이 방송통신 주요정책을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관장 홍보활동, ▲적극적 오보 대응, ▲대언론 취재지원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 영상·이미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정책홍보를 강화

◇ 전략목표와 임무 간의 상관성

-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방송통신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재개발, 정보보안, 규제개선, 직장문화, 법제관련 사항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에 기여
- 미디어 규율체계 재편, 미디어 정책 추진체계 마련, 디지털·미디어 규범 확립, 방송역사 정립을 통해 미디어 정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방송통신 주요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대언론 취재 지원 등을 통해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고 기관 신뢰도를 제고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지지 확보

<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	2	4	8	17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IV-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②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④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⑤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요 업무계획 이행 상황 점검률 ② 규제심사 절차 준수도 ①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률 ② 혁신과제 이행률 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② 비상대비 및 보안점검 달성을 ① 기존 규제정비 과제 이행률 ① 국정과제 교육 활성화 ② 연가활용 활성화 ③ 공공구매 법정의무 구매율 달성을 ④ 적극행정 활성화 ①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율(%)
IV-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제 컨퍼런스·회의 등 국제행사 활동 건수 ② 보도자료 온라인콘텐츠 제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책소통 활성화율 ②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만족도 ① 국민참여 콘텐츠 실적 ② 유튜브 채널 활성화율(%) ③ 페이스북 채널 활성화율(%) ① 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 ② 남북방송통신 교류 정책 만족도

전략목표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1) 주요내용

□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

-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실현을 위하여 기관내·외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정부업무평가 주요내용인 국정과제, 정부혁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과 행정관리역량 강화 등 각종 시책 추진
- 직원의 업무 전문성과 공직가치 확립 및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 미디어 통합법제 및 정책 추진체계 마련, 디지털·미디어 규범 확립, 방송역사 정립을 통해 미디어 법체계 및 정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시장과 이용자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
- 방송통신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정책소통 활성화를 통해 기관 신뢰도를 제고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 제고

- 방송통신 관련 외국정부,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교류·협력 추진 및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
 -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및 공동제작 협정제작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
- ※ 캐나다·태국 등 FTA 체결국 대상 방송공동제작 협정 추진, 방송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 개최 및 해외 우수 공동제작 시상 등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2) 성과지표 : 해당 없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국정과제 등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정책이 과기정통부 등 외부기관과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력 필요
- 신종 감염병 출현 등 사회·자연재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국제 정세 변화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수행 환경 조성 필요
- K-방송콘텐츠가 전 세계 방송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방송통신 분야 교류 협력 기반 확대 및 지원기반 마련 등 국제협력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 OTT 등 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급격한 성장, 디지털·미디어의 일상화 등 미디어 산업 및 미디어 이용 환경 전반이 변화

□ 갈등요인

- 기관 내·외 소통 활성화 추진 결과, 국민 편의증진과 내부 업무개선이 이루어져 성과가 나고 있지만 구성원의 업무부담도 증가하는 상황
- 사회적 재난 발생이 돌발적이며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피해범위 및 대상 확정의 어려움과 안보 인식 저하로 비상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조
- 방송통신서비스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정부 간 규제 협력 및 K-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낡은 규제 혁신, 미디어 법제 개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요구 증대

□ 갈등관리계획

-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구성원들의 업무 경감에 노력
-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 활성화를 통해 법령 정비 및 규제개혁의 추진동력 확보
- 감염병 확산 등 사회적 재난에 따른 국민 불안감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구성·운영으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충무 계획 수립 및 을지훈련 실시로 전시 상황 비상대비 태세 구축
- 정부 간 협력, 국제기구 활동 참여 및 방송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방송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지원
-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디지털·미디어의 중장기 정책비전 마련
- 기관장, 부서장이 의지를 갖고 구성원들로부터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기 주도적 근무형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
- 다양한 상황에서 공직자로서의 정책판단 기준이 되는 국정철학 등 공직가치 분야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개인별 목표 수립 및 이수 여부 지원 · 관리
-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을 온라인 홍보콘텐츠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 방통위 소관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국정관리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 및 평가 추진
 - *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정부 내 시스템을 통해 국무조정실, 유관 부처 간 의견을 교환하고, 실시간 점검·관리·평가 등 국정과제 적극 추진
-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실현을 위하여 기관내·외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타 부처와의 협업과제 적극 수행 및 정부혁신 콘서트 등 기관내·외 소통 강화로 정책 수행성과 창출

□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 수립·시행을 통한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비상대비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훈련 실시로 전시 상황 비상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국가 위기관리 체계 확립

□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 기업활동·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이 되는 방송통신 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
-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 공직자의 기본 소양 함양, 직무 전문성 제고,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공직문화 확립을 도모
-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 개인적 차원의 효율성 제고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조직 차원의 업무성과 극대화 실현 노력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포상

□ 합리적인 미디어 정책 추진체계 마련 및 미래비전 수립

- 미디어 매체별로 분산된 규율체계를 포괄하고 미디어산업 전반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및 미디어 정책 추진체계 마련
-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일어나는 국민 불편사항 및 피해구제체계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역사 100년 정립 및 미디어 미래비전 수립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주요 업무계획 이행상황 점검률(%)	신규 100%	100%	100%	주요업무계획은 방통위 조직 혁신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주요과제임을 감안하여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이행 실적 점검을 실시하며, 해당 목표를 100%로 설정	(이행실적 점검 횟수 / 4회) × 100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자료
규제심사 절차 준수도(%)	-	-	62.5%	75%	규제 신설·강화 시 피규제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최선의 정책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규제 심사 절차 준수가 중요하며, 작년 목표치(65%)보다 5% 상향한 적극적 목표 설정	심사절차 준수 간수 / 총 심사건수 × 100 규제정보화시스템,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문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국정과제 등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정책이 과기정통부 등 외부기관과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력 필요
-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조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대비 대응체계 운영 필요
- OTT 등 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등장 및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법체계 및 규범 확립 필요성 증대

□ 갈등요인

- 기관 내·외 소통 활성화를 추진하여 국민 행정 편의이 증진하고 내부 업무방식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내부 구성원의 업무부담도 증가하는 상황
- 사회적 재난 발생이 돌발적이며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피해범위 및 대상 확정의 어려움과 안보 인식 저하로 비상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조
- 미디어 규율체계가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OTT)」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신·구 미디어 간 규제 일관성 및 형평성이 저하

□ 갈등관리계획

-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구성원들의 업무 경감 노력
- 코로나 등 사회적 재난에 따른 국민 불안감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 구성·운영으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훈련 실시로 전시 상황 비상대비 태세 구축

- 장시간 근무 관행, 상사·동료 눈치 보기 등으로 자유로운 연가사용이나 정시퇴근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일 할 때 제대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쉴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
- 공직관은 공직자로서 지녀야 하는 기본적 항목이나 직무분야와 직접관련이 없는 국정과제, 공직가치 등 교육은 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체계적 관리·독려가 지속적으로 요구
- 신·구 미디어서비스 모두를 포함하는 미디어 통합법제(안) 마련, 디지털·미디어 규범 확립을 통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전문가(산업계·학계) 및 이해관계자(이용자·사업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예정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IV-1-①)

□ 추진배경

- 국정과제 및 주요업무계획 등 주요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혁신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핵심역량 집중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통위 소관 4개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국정 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점검 및 평가

*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국정과제 핵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정과제 적극 추진

-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 정부혁신을 통해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실현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낡은 업무관행 제거

- 노년층·장애인 등에 취약계층에 대한 TV보급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포용적 정책수행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추진, 국민체감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확대, 혁신문화 지속 조성 등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3년 업무계획 수립	~'23.2월	
	2023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23.4월	
4/4분기	2023년 정부혁신 콘서트 개최	'23.10월	
연중	2023년 주요업무계획 이행점검	분기별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	월별	
	2023년 창의역량 교육 실시	수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방송통신 사업자 및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노령층, 시청각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디지털취약 계층
 - 방송통신 업계 각 분야별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과정에의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
- **(이해관계자)** 방송통신사업자 및 시민단체, 지자체 등
 - 방송통신산업의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특정이 어렵고, 영향이 광범위하여 의견조정에 한계

□ 기대효과

-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해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을 정착시키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구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률(%)	100	100	100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의 연도별 세부이행계획에 대한 분기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국정과제는 방통위 주요 업무 추진 과제임을 감안하여 이행목표를 100%로 설정	(점검 횟수 / 12) × 100 ※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실적을 평가
혁신과제 이행률(%)	100	100	100	방통위 정부혁신 실행계획 상 혁신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측정 - 정부혁신과제는 방통위 조직혁신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주요과제임을 감안하여 이행목표를 100%로 설정	(이행과제 수 / 전체 과제 수) × 100 이행실적 점검

②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IV-1-②)

□ 추진배경

- 국가 안보 및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 시설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 비상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충무계획 수립과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비상 시 동원을 위한 자원조사 및 국가 위기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 수행
- 코로나19, 풍수해(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자연적·사회적 재난에 따른 국민 불안감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대응체제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시설에 대한 내실 있는 보안감사를 통해 보안 취약요인을 사전 발굴·차단하여 보안사고를 예방
- 주요 방송사업자와 합동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역량 향상 및 안전의식 제고
-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충무집행계획 작성·시행·실시계획 승인
- 비상대비분야 확인점검 및 중점관리 대상 업체(동원지정업체) 자원 조사 실시로 비상대비 관련 문제점 개선(활용성 제고)
-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영상회의 지원 등 기술지원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동원자원조사 실시	2~3월	
	2023년도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1월	
2/4분기	충무집행계획 수립 및 검토·승인	5~11월	
	2023년도 상반기 보안감사 실시	4월	
3/4분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이행 점검	9~10월	
	2023년도 을지훈련 실시	8월	
	2023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9월	
4/4분기	비상대비 확인 점검	10~11월	
	2023년도 하반기 보안감사 실시	11~12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추진실적 및 익년도 계획 보고	11~12월	
수시	방통위 홈페이지 내 백신 가짜뉴스 신고코너 운영	연중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중대본 영상회의 기술지원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비 및 방송사의 재난 및 전시 상황 태세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이해관계자

- **(사이버 보안대비)** 정부·공공기관(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방송사업자(재난주관방송사 및 전국 방송사업자 등)
- **(비상대비)** 주요 방송사를 포함한 중점관리 대상 업체(동원지정업체)

□ 기대효과

- 현실성 있는 위기상황을 고려한 충무계획 수립, 을지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으로 위기 대응능력 향상과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한 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안인식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방송통신 행정지원(성과관리 비대상)		
① 방송통신 운영지원(7131)	일반회계	28.2 (51)
▪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307)		7.5
▪ 행정사무정보화(308)		20.7
		21.2 (45.1)
		8.6
		12.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80.7	81.2	82.4	83.4 '22년 목표치대비 1.0% 향상된 목표 설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본인확인기관 : 6개 - 위치정보사업자 : 3개	AL(%)=(T/5)×100 ※ AL : 수준율 T : 전체 기관의 수준평가 점수 평균(5점 만점)	기관별 결과보고서 등
비상대비 및 보안점검 달성을(%)	100	100	100	100 목표대비 실적지표로 매년 100% 달성 필요 <'23년도 목표> - 지원조사 대상업체수 : 44개 - 보안점검 목표 : 14개	{[(자원조사실시업체/자원조사대상업체) ×0.5]+[(보안점검 기관수/보안점검 목표 기관 수)×0.5]}×100	점검 결과보고서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IV-1-③)

□ 추진배경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방송통신 규제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업활동·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이 되는 방송통신 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
-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상반기)	'23.2월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개최(상반기)	'23.3월	
2/4분기	2023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23.6월	
3/4분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하반기)	'22.8월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개최(하반기)	'22.9월	
	규제비용 감축제 운영	'22.9월	
4/4분기	규제혁신 실적보고서 제출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통신사업자 및 서비스 이용자) 방송통신 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함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사업자, 관계부처) 규제혁신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송통신 사업자 및 관계 부처 간 의견 대립 존재

□ 기대효과

- 기업과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완화·폐지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기존규제정비 과제 이행률(%)	100	100	100	개선계획 대비 실적 측정 - 양적 과제 발굴 방식을 지향하고 성과·질적 지표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 선정 -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 추진을 위해 '22년도 이행 목표치 100%를 유지하여 100%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이행률(%) = (기존 규제 정비 이행 과제 수 / 기존 규제 정비 과제 수) × 100 * 이행여부 판단기준: - 법률 제·개정 시정은 국회 제출 까지 를 이행으로 판단하고 시행령이하 법령의 경우 실제 제·개정 여부로 판단 - 법령 제·개정 시정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개선 관리카드 상 기재된 개선 내용을 보고 이행 여부 판단	보도자료 및 개정안 내부자료

④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IV-1-④)

□ 추진배경

-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공직자의 올바른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전문역량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국정가치 실천 문화 조성 필요
※ 올해부터 공직문화 수준진단 혁신지표(인사처 '23.3.14.)를 통한 진단 실시
- 효율성·투명성·신뢰성 등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구성원 간 학습·공유하여 새로운 국정(國政) 가치의 실현·지속을 위한 동력 확보
- 일·생활 균형을 직원의 권리로 인식하고 자유로운 연가·유연근무 활용을 통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효율적·생산적 근무 환경 조성(인식의 전환)
-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 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통해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
-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전문적·창의적 발상을 통한 선제적이고 능동적 현장 문제에 대응하는 적극행정이 절실한 상황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발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직자의 기본 소양 함양, 직무 전문성 제고,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공직문화 확립을 도모
- 사회적 가치 등의 국정과제 교육과 민생체험·봉사활동 등을 추진하여 공직가치를 적극 실천하는 공직자 상 구현
- 방송통신 관련 직무 교육과 기관주도 및 개인별 외국어 교육을 추진·지원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전문성 제고

-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 기본 소양 및 역량과 방송통신 업무에 필요한 기초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실시
- 자율방역체계下(포스트 코로나19 대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만들고, 개인별 연가·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 조성
 - * 코로나19는 그 간 유지되어 온 근무문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향후 일하는 방식에 대해 새로이 인식하는 계기
- '22년 유연근무 활용 독려를 통해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유연근무 활용율 : 95.6%)하였다면
- 올해는 연가 활용률을 지표로 설정하여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유도하되 권장연가일수를 15일로 지정하여 연가활용과 연가저축(보상) 간에 개인의 선택 기회 확대 제공
- 계절별 여행주간과 연계시킨 하계, 동계휴가 장려 및 부서장 연가 사용 현황 점검을 통한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환기
- 공공물품 구매 및 조달 시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업·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
-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간 구매하는 제품(공사, 용역, 물품) 액수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
-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간 구매하는 중소기업제품(물품)액수의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

-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거, 연간 구매하는 제품(용역, 물품) 액수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
- 분야별 전자시스템(공공구매종합정보망, 꿈드래 등)을 적극 활용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이 공감·체감 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전파
- 본부 각부서·소속기관·산하 공공기관 등 내외부 공모를 통한 방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 실시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우수사례 및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전 부서에 확산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자체 외국어 위탁교육	2월	
	공무원 복무제도 교육	3월	
	'23년 방통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3월	
2/4분기	'23년도 근무혁신방안 종합계획(공직문화 혁신 추진 계획) 수립	4~5월	
	독서통신 교육	5~6월	
	방통위 적극행정 자체 교육	6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분기	
	장애인식 개선 교육	2분기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 개최	9월	
4/4분기	적극행정위원회 개최(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홍보	12월	
	복무제도 만족도 조사	12월	
	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4분기	
	아동학대 예방교육	4분기	
매 월	부서장 연가이용실적 점검	연중	
매 월	유연근무 실적 집계 및 분석	연중	
수 시	복무점검 등 근무기강 확립	연중	
수 시	공공구매 및 구매율 점검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조직) 국정가치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계획·추진함으로써 조직생산성과 직원 역량을 제고하여 조직 효율 향상
- (직원) 국정가치, 전문역량 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배양하고 직무 전문성을 제고
 - 연가 활성화를 통한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 이를 자기주도적 근무 문화의 확산 동력으로 활용
- (국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 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이 증진
- (중소기업 및 장애인기업제품) 해당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장애인의 자활 지원

○ 이해관계집단

- (교육기관) 국정가치 및 직무분야 전문교육 실시에 적합한 교육 기관과 능력 있는 강사 필요
- (부서장·동료) 연가·유연근무 활용이 활성화되더라도 조직 생산성 및 업무능률이 유지·향상될 수 있음을 구성원이 인지하고 함께 하는 노력 필요
- (국민평가단)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시 민간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 평가점수를 반영(적극행정위원회(50%)+국민평가단(30%)+직원평가(20%))

□ 기대효과

- 공직자의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도모하고 일관성 있는 국정목표·과제 실행력을 제고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

- 연가활용 장려를 통해 근무시간 중 업무 집중도를 높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이를 조직 내 선순환
-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
- 국가배려시책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품판로 확대와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경제 자립을 지원
-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부처주도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여 공직사회 실질적 변화 유도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국정과제 교육 활성화(시간)	19.9. 20.1 21.04		22	새 정부 출범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국정과제 교육이수시간 목표치 평균(19.7시간) 대비 11.6% 증가한 22시간을 목표치로 설정	총 교육 이수시간 합계 / 4급 이하 현원(과장급 포함)	국정과제 교육 이수 실적
연가활용 활성화	-	-	신규	15일	자유로운 연가 활용 및 개인의 선택 기회 제공을 위해 위원회 권장연가 일수를 15로 설정	위원회 직원의 연가사용 일수의 평균(연가사용 일수의 합/위원회 근무 직원 수)
공공구매 법정 의무 구매율 달성을	-	-	신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분야별 공공조달 구매의 법적 의무구매 기준을 달성하도록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중소기업제품 : 50% - (B)기술개발제품 : 15% - (C)장애인생산제품 : 1% <p>※ 공공조달 관련 법률에서 정한 법적 의무구매 기준</p>	$\{((\text{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기준 달성 여부} \times 0.4) + (\text{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기준 달성 여부} \times 0.4) + (\text{장애인생산제품 의무구매 기준 달성 여부} \times 0.2)\} \times 100$
적극행정 활성화(%)	-	100%	100%	과년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실적(22년 10건) 대비 20% 이상 증가한 12명을 목표로 설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12명 100%	적극행정위원회 실적 자료

⑤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 설계(IV-1-⑤)

□ 추진배경

- OTT 등 신유형 미디어의 급격한 성장과 해외 사업자의 국내시장 영향력 확대 등으로 서비스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규제 형평성, 공정거래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이슈가 대두
 - 미디어시장에서 공정경쟁 질서 확립, 이용자 권리 보호, 신·구 미디어 규율체계 일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서비스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법제 마련 필요
- 디지털·미디어의 일상화로 방송 및 온라인 상에서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이슈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거나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 및 권리보호에 한계
 -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 전반에 대한 범사회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새로운 법제도적 규범과 윤리 기반 마련 필요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하에서 새로운 미디어 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우리 방송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방송 도약의 비전 제시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매체별로 분산된 미디어 분류체계 정비를 통한 신·구 미디어 법체계 일관성 제고 및 미디어 산업 전반의 장기적 성장 지원을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안) 마련
- (디지털·미디어 규범 확립)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불편 사항 및 피해구제 관련 현황 등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구제가 미흡한 부분을 우선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미디어 혁신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연구반을 운영하여, 미디어 발전전략 및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할 정책 추진체계 마련
- (방송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방송역사 100년 고찰 및 미디어 미래 비전 수립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시기·내용 등 구체화 검토)
 -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연계사업을 발굴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미디어 통합법제 관련 정책연구 제안서 공개	'23.3월	
	디지털·미디어 규범에 대한 정책연구 제안서 공개	'23.3월	
	중장기 미디어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제안서 공개	'23.3월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추진 관련 정책연구 제안서 공개	'23.3월	
2/4분기	미디어 통합법제 관련 연구반 구성·운영	'23.5월~	
	디지털·미디어 규범 관련 연구반 구성·운영	'23.5월~	
	중장기 미디어 발전방안 관련 연구반 구성·운영	'23.5월~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관련 연구반 구성·운영	'23.5월~	
3/4분기	미디어 통합법제 관련 연구반 운영(계속)	'23.8월	
	디지털·미디어 규범 관련 연구반 운영(계속)	'23.9월	
4/4분기	미디어 통합법제(안) 마련	'23.12월	
	디지털·미디어 전반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마련	'23.12월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23.12월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추진방안 마련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시청자·이용자) 합리적인 미디어 규율체계 및 건전한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해, 미디어 서비스 전반의 만족도 제고

- (미디어 사업자) 미디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미디어 규율 체계의 합리성·일관성을 개선하여,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적 지원 및 진흥 기반을 마련

- 이해관계집단

- (기존 방송사업자 및 OTT 사업자) 신·구 미디어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OTT 등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의 새로운 규제체계 포섭 등에 대한 문제제기

□ 기대효과

- 미디어 통합법제(안), 디지털·미디어 규범의 기반 마련을 통해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디어 산업발전과 이용자의 건전한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국방송역사 100주년의 재조명을 통해 우리 방송역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을 통해 미디어 산업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율(%)	신규 신규 신규	90	미디어 통합법제 및 디지털·미디어 규범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이해 관계가 있고, '23년 신규지표인 점을 감안 '23년 목표치를 90%로 설정	① + ② ①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추진율(0.6) 연구반 운영X0.2+대외 의견수렴X0.2+법안 마련X0.2 ② 디지털·미디어 가이드라인 마련(0.4) 연구반 운영X0.2+가이드라인 마련X0.2	

(1) 주요 내용**□ 대국민·대언론 정책 소통 강화**

- 방송통신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홍보를 활성화하고, 대언론 취재 지원을 강화하여 대국민·대언론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신뢰도 증대
-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기획 홍보를 추진하고, 오보·왜곡보도 등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올바른 정책정보를 제공

□ 온라인 소통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확산

- 방송통신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활용 및 위원회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신속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한 온라인 소통 강화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 정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급변하는 방송통신 통상 환경에 대응
 - 지역별 주요 국가와의 고위급 면담 및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한 방송통신 교류협력 활동 지원
-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해외 우수 방송 공동제작 대상(大賞) 시상 등
 - 해외 방송시장 및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 분석 등 방송콘텐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K-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남북 방송통신 교류 추진

-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 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국제 컨퍼런스·회의 등 국제행사 활동 건수(건)	2	2	2	3	코로나19 완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국제 사회 환경 및 이슈에 따라 적극적 목표치 설정	국제 컨퍼런스 및 회의 등 국제행사 참여 실적	내부자료, 보도자료 등 실적자료
보도자료 온라인콘텐츠 제작률(%)	100	100	100	100	방송통신 정책을 발표하는 보도자료 내용을 국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로 구성해 제작 하는 비율로, 정책의 적극적 확산을 위해 100% 목표치 설정	온라인콘텐츠 게재건수/ 보도자료 배포건수	방통위 콘텐츠 게재실적 및 보도자료 배포실적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다양한 매체의 등장 등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미디어가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대국민 정책홍보 필요성이 증가
- 미디어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방송통신 정책이 점차 복잡해져 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 필요성 증대
- 국가 간 FTA 확대, 글로벌 OTT 서비스의 확산 등 방송통신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해외 방송통신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 체계 강화 필요
-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지속 등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큼

□ 갈등요인

- 전문성이 높고 규제 위주의 방통위 방송통신 정책특성으로 인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 및 정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음
- 규제중심 업무로 일반국민의 주목도가 높지 않고, 내용이 어려워 정책 확산이 어려운 한계
- 국가 간 방송통신 정책이 상이하고 국제적 협안 대응을 위하여 국가 간 협의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많음
-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 등 대내·외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음

□ 갈등관리계획

-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을 다양한 홍보 콘텐츠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 고위급 양자 면담, 국제기구회의 참여 등을 통해 방송통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통해 정부 간 정책 협력 강화
-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 소통 강화 (IV-2-①)

□ 추진배경

-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방송통신 정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알기 쉽게 전달하여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 언론의 원활한 취재를 지원해 대국민 방송통신 정책 홍보 활성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대국민·대언론 소통 활성화)**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유형별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정책소통기능을 강화
 - 방송통신 주요정책 기획홍보, SNS와 연계한 디지털 소통 강화, 주간 홍보계획·정책브리핑 배포를 통한 언론 취재 지원 등 추진
- **(오보 대응 체계화)** 언론보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오보에 대해서는 '단계별 맞춤 대응 전략*'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 * (1단계) 직접 설명 및 수정 요청 → (2단계) 설명자료 배포 → (3단계) 언중위 제소
- **(기관장 홍보활동 강화)** 현장 소통, 정책관계자 간담회, 인터뷰, 기고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two-track 전략을 통해 정책홍보 효과 극대화
- **(직원 소통역량 강화)** 보도자료 작성 요령 등 직원 대상 홍보교육 및 우수 보도자료·홍보사례 발굴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독려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통위 업무계획 홍보	'23.2월	
	주요정책 홍보계획 수립	'23.3월	
2/4분기	우수 보도자료·홍보사례 시상	'23.6월	
3/4분기	정책소통 활동 중간 점검	'23.9월	
4/4분기	대국민 정책 만족도 조사	'23.12월	
	우수 보도자료·홍보사례 시상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연중	기관장 언론홍보 추진	수시	
	보도자료 배포(영문 보도자료 포함) 및 브리핑 지원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모니터링		
	주간 홍보계획 관리		
	설명·반박자료 배포 등 오보 대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언론사)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계획·정책브리핑 배포 등으로 언론 취재 지원 추진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사업자) 신유형 매체 등장, 글로벌 플랫폼 성장 등에 따라 방송통신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홍보가 필요

□ 기대효과

- 방송통신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 및 언론 취재 지원 강화를 통해 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지지 확보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정책소통 활성화율(%)	신규 신규 신규	100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취재 지원을 통한 언론보도 활성화를 위해 오보대응과 주간 홍보계획 사전배포 100% 달성을 목표치로 설정	(주간 홍보계획 사전배포 건수 /52주)×50% + (오보대응건수 /오보모니터링 건수) ×50%	정책여론 수렴시스템 및 방통위 홈페이지 (알림마당-일일브리핑 코너)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만족도(점)	76.25 77.15 79.4	78.7	최근 3년 만족도 결과의 평균 (77.6)과 연평균 증가율(1.4%)을 고려하여 3년 평균 만족도 대비 1.4% 증가한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	만족도 조사 결과 (대국민만족도 50%+대언론 만족도 50%)	방통위 온라인 방문자·출입기자단 대상 설문조사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IV-2-②)

□ 추진배경

- 방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및 위원회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SNS 채널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SNS 채널 활성화) SNS 채널 활성화를 통해 정책 메시지를 확산하고 다양한 세대와 보다 쉽고 친근하게 소통
 - 2030세대 대상 소통 강화를 위한 특화형 콘텐츠 개발
- (생활밀착형 정책홍보 · 캠페인 추진)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송 · 통신 관련 정책 홍보 · 캠페인을 추진하여 실용적 소통 확대
- (사회적 이슈 대응) 사회적 이슈 대응 적극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 확산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상반기	2023년도 홍보 계획 수립	3월	
	SNS 콘텐츠 제작 및 채널 관리 등 지원 대행사 선정	2월	
	정책기자단 대상 정책설명회 및 OT	3월	
	주요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수시	
	기관 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 운영 · 활성화	수시	
	온라인 활성화 이벤트 실시	수시	
	상반기 주요 정책 기획 캠페인 기획 · 추진	3월~6월	
	국민참여 방송통신 정책 콘텐츠 제작	3월~6월	
하반기	온라인 활성화 이벤트 실시	수시	
	주요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수시	
	기관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 운영 · 활성화	수시	
	부처협업 캠페인 진행	9월~11월	
	하반기 주요 정책 기획 캠페인 기획 · 추진	9월~12월	
	국민참여 방송통신 정책 콘텐츠 제작	9월~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방송통신 관련 정보·정책 등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에게 위원회 정책 홍보 및 생활 밀착형 방송통신 정보 제공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사업자·인플루언서) 방송통신 분야 사업자 및 인플루언서 등은 위원회 정책에 관심이 커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정보전달 필요

□ 기대효과

-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동영상·카드뉴스 등 콘텐츠로 제작하여 정책 이해도 증진 및 대국민 소통강화
- 국민이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21 '22 '23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국민참여 콘텐츠 실적	123건	180건	200건	144건	일반국민이 방송통신 정책을 취재해 콘텐츠를 제작 하는것으로 국민 참여 콘텐츠를 성과지표로 설정 - 전년도 목표(132건) 대비 10% 증가 [월 12건 × 12개월] = 144건	방통위 정책지단 제작 콘텐츠 및 국민 의견 제안 등 기반 콘텐츠 제작 또는 기재 건수	방통위 콘텐츠 관리 시스템 및 SNS 게재 현황
유튜브 채널 활성화율	신규 신규 신규	110% (전년대비 10%증가)	110%	국민소통평가 동영상 대표 SNS 채널인 유튜브의 전년 대비 활성화 정도를 평가지표로 설정 - 전년대비 유튜브 채널 구독자·조회수 성장을 평가 - 산출 = 전년대비 구독자 증감 50% + 전년대비 조회수 증감 50% ※ '22년 구독자 : 27,200명 '22년 조회수 : 2,633,125회	((('23년 구독자/22년 구독자)×0.5+ ('23년 조회수/22년 조회수)×0.5))×100 ※ '23.12.31 기준	유튜브 채널 내 구독자·조회수 현황 자료	
페이스북 채널 활성화율	신규 신규 신규	110% (전년대비 10%증가)	110%	국민소통평가 주요 SNS 채널인 페이스북의 전년 대비 활성화 정도를 평가 지표로 설정 - 전년대비 페이스북 채널 구독자 및 도달수 성장을 평가 - 산출 = 전년대비 구독자 증감 50% + 전년대비 도달수 증감 50% ※ '22년 구독자 : 37,076명 '22년 도달수 : 1,375,773회	((('23년 구독자/22년 구독자)×0.5+ ('23년 도달수/22년 도달수)×0.5))×100 ※ '23.12.31 기준	페이스북 페이지 내 구독자·도달수 현황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IV-2-③)

□ 추진배경

- 방송통신 규제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적 현안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교류 협력 활동 지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 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남북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 (국가 간 협력 기반 강화) 정책 수요에 기반한 해외 주요 방송통신 규제기관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한 주요 정책 현황 공유 및 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국제기구 협력 강화) AIBD 등 방송통신 국제기구의 행사 참가를 통한 해외 방송통신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력 채널 활성화
 -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북한 방송통신에 대한 이해제고 및 교류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국내·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 개최
 -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TV, 라디오를 통한 북한의 문화, 역사 등 비정치 분야의 통일관련 프로그램 제작·방영 지원

-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 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방송통신 정책 수립 및 민간의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와 방송협력 강화를 위해 FTA에 근거한 국가(태국·튀르키예·캐나다 등)와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및 통상 협상 적극 대응
- (공동제작 협정 제작지원)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국가와의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를 지원하여 협정체결의 실효성 제고 및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촉진
-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방송콘텐츠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방송교류를 통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래 사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공유하기 위한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 (방송공동제작협력강화)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대상국의 시장현황, 규제체계, 공동제작 현황 및 콘텐츠 이용 행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국내방송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
- (방송통신 분야 통상대응 체계 구축) 협정에 포함할 내용 및 협상전략 마련을 위해 국내 방송사·제작사·유관기관·법조계·학계 의견 수렴과 외교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송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2월~	
	2021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추진 계획 마련	3월	
	방송 공동제작 해외시장 분석 조사대상국 선정 및 조사	3월~	
2/4분기	공동제작 협정 체결 국가와의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개시	4월~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사 선정	4~6월	
	해외 우수 방송 공동제작 대상(大賞) 공모	4~6월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기본계획안 마련	6월	
3/4분기	남북 방송통신 국제 콘퍼런스 중간 점검	7~9월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비 고
4/4분기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大賞) 심사	7~9월	
	방송 공동제작 해외시장 설문조사 실시	8~9월	
	남북 방송통신 국제 컨퍼런스 개최	10~12월	
	방송 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 개최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大賞) 시상	10~11월	
	통일 방송프로그램 방영	12월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정리	12월	
연중	방송 공동제작 해외시장 분석 보고서 결과보고 해외 미디어 이용행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12월	
	주요 국가와의 방송통신 정책 교류·협력 추진	연중	
	방송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연중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연4회 개최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내 방송통신 사업자 및 제작사, 학계 등 전문가, 시청자 등
- (이해관계자) 국내외 방송통신 사업자 및 제작사, 해외 방송통신 관련 규제 기관 등

□ 기대효과

- 방송통신 규제 분야 정부 간 정책교류 및 주요 국제기구 논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정책 동향 파악 및 국내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국제협력 기반 강화
-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 시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자국물 인정을 통한 수출 증대, 제작기술과 노하우 공유 및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방송관련 국제기구 및 정부 간 협력 강화 토대 마련, 방송콘텐츠 교류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프로그램 발굴(시상) 등 국제 방송공동제작 인식 제고와 한류 확산 실행력 강화
- 해외 방송시장·규제현황·구매력 등 체감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공동제작협정 협상 대응 및 방송사 등의 해외진출 지원

-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 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에 대한 의식 제고 및 국제적 통일 공감대를 확산 하는 한편, 북한 방송통신 현황 등에 기초 자료 제공을 통해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II-1-일반재정⑤)		
① 방송통신 운영지원(3135)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302)	23.56	23.56
-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2.74	2.74
- 방송통신 국제기구 공동협력 사업	1	1
- 방송통신 분야 통상 대응체계 구축	방송통신발 전기금	3
-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0.9	0.9
-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3.4	3.4
-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	1.7	1.7
- 방송공동제작 협력 강화	4.82	4.82
- 공동제작 협정 제작지원	6	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점)	신규 신규	73.8	74.5 '22년 실적치(73.8점)의 1% 상향한 수준인 74.5점으로 설정 ※ 방송통신 인프라강화 만족도(70.5점)와 방송공동제작협력강화 만족도(77.1점)	[(방송통신 인프라 강화 만족도)x0.5] +[(방송공동제작 협 력 강화 만족도) x0.5]	방송통신 사업자, 제작자, 방송사 등 수혜기관 설문조사 실시
남북방송통신 교류 정책 만족도(공통) (점)	80.5 81 82	83	최근 남북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3년 목표치를 83 점으로 설정	남북 방송통신 교류 분야 정책 만족도	방송통신 업계 및 학계 등 남북 방송통신 교류 정책 수혜기관 설문조사 결과



IV 환류 등 관련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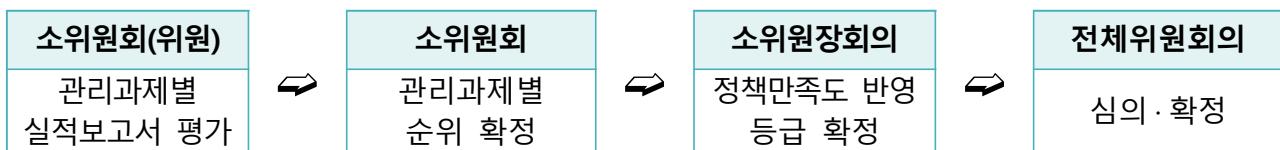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2. 평가결과 환류체계
 3. 변화관리 계획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행정관리 분야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
-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로 운영하되, 소위원회는 관리과제 분야별로 구성
-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계획 심의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 결과 심의
- 성과관리에 관한 절차, 환류 등 성과관리의 전반적 사항을 자문

< 자체평가 절차 >



□ 평가지원조직 구성

- 효율적인 평가업무와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지원총괄팀과 자체 평가위원회 분과별로 평가 활동을 지원하는 평가지원팀을 구성 · 운영
 - 평가지원총괄팀(의안정책관리팀)은 자체평가 주요계획을 수립 · 시행
 - 자체평가 기본방향, 분야별 평가계획, 평가보고서 작성방향, 평가 기준 · 방법 · 일정 등 세부 추진방향 수립
 - 평가분야별 점검결과 및 평가결과보고서 종합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전체 ·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등 총괄
- 정부업무평가 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 시행
- 평가자와 피 평가부서 간 소통창구 역할
- 평가지원팀(각 국 총괄)은 각 소위원회 정책소통 및 평가 실무 지원
 - 과제 담당자로부터 평가자료 수합 · 정리, 자료 제출 등 소위원회 평가활동 지원
 - 평가관련 제도 개선, 정책설명회 개최 수요제기 등 국별 의견 제출
 - 반기별 성과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등 자체점검 시 국별 추진실적 1차 확인 · 점검

□ 평가(점검)의 시행

- 상반기 세부과제별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연이 예상되는 사업은 원인분석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 연간 추진실적 평가 시, 평가지원팀은 자체평가 계획에서 제시된 분야별 평가지표의 측정기준에 따라 각 소관별 추진실적 및 증빙 자료를 소위원회에 제출
-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후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및 심의 · 의결
- 자체평가결과 미흡과제는 원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도록 하여 향후 정책수립 시 반영하고 **Plan-Do-Check-Action** 사이클 확인 · 점검
- 인력(업무량)·조직(구조) 차원의 종합적 심층진단 병행

<이행상황 관리 점검 및 평가 체계>



주요 일정

구분	주요 내용	일정
'23년 1분기	o '2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3월
	o 자체평가위원회 개최(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3월
'23년 2분기	o '23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계획 직원 설명회 개최	5월
'23년 3분기	o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이행계획 점검 및 국조실 제출	7월
	o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시행계획 수정(필요시)	8월
'23년 4분기	o 자체평가위원회 정책현장 방문 및 워크숍 개최(필요시)	10월
	o 성과관리 시행계획 정책만족도 조사	11월
	o 자체평가 설명회 개최	11월
	o '23년 자체평가 실시	12월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성과관리의 환류

- 성과관리 관리과제별 자체평가(7등급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과제별 개선 보완사항은 '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
-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 하지 않으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증액을 지양
- 자체평가를 부서성과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연봉·성과상여금 평가 시 활용 등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업무수행 유도

□ 정책개선 및 정책품질 제고에 활용

- 자체평가 수행과정에서 평가위원 등이 발굴 또는 제시한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여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 평가결과 우수·미흡사례 등은 각 국에 전파·공유하여 성과관리 제고 -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이행여부, 개선효과 발생 등 환류 여부를 자체평가 시 반영

□ 조직 및 정원관리에 활용

-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해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소요정원 및 중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 평가결과,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조정·재배치, 부서기능 재조정 등 탄력적인 조직 운영 - 특히, 미흡과제에 대해서는 종합 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운영에 활용

□ 예산편성에 활용

- 관리과제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소관 부서의 재정사업에 반영하여 자체평가와 재정사업 간의 인센티브·패널티 체계 운영
- 관리과제 중 '우수' 평가를 받은 부서의 재정사업에 대하여 증액, '미흡' 평가를 받은 부서의 재정사업은 감액 추진

□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에 활용

- 복수직 4급 이상 개인성과평가 결과,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승진·인사·전보·파견 등에 활용
- 업무실적이 탁월한 우수인력은 주요보직 전보 및 부외 파견 시 우선 배려
- 국내외 장·단기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선 배려

□ 성과급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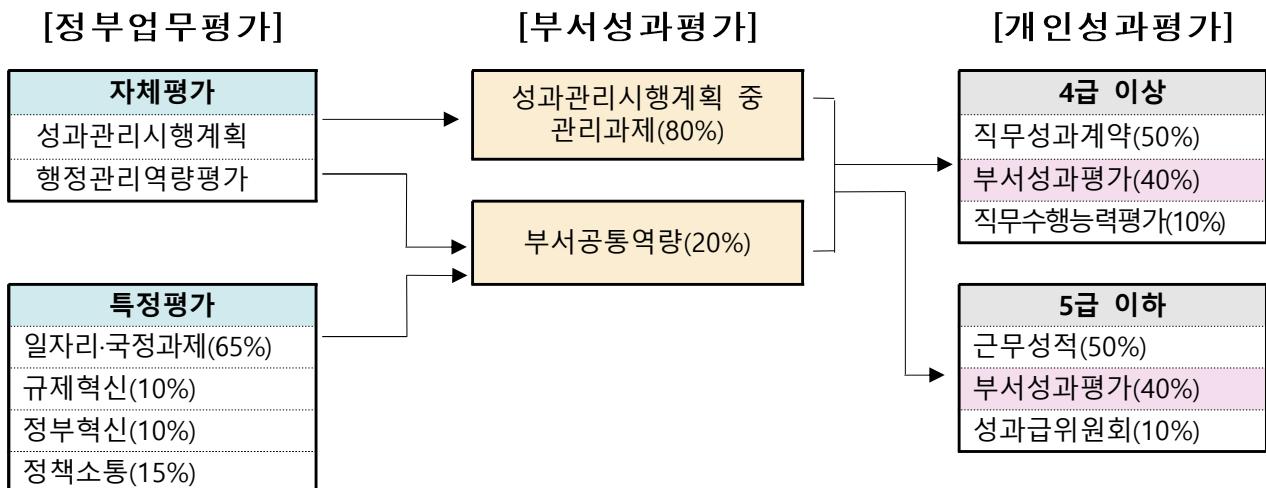
- 성과관리과제별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성과에 반영하는 등 통합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 (4급 이상)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체결한 '성과계약과제'에 대한 목표달성을(업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부서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 부서성과평가, 성과급심사위원회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성과연봉(5급) 및 성과상여금(6급 이하) 지급등급 결정

※ 부서성과평가에 자체평가결과와 국정과제 등 특정과제 수행실적을 반영

<성과급 지급 등급결정 평가항목>

구 분	대 상	등급결정 기준
성과연봉	4급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성과계약(50%), 부서성과평가(40%), 직무수행능력평가(10%) * 자체평가(80%)+행정관리평가(20%) → 자체평가의 개인평가 반영비율은 32% 수준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실적평가(60%), 부서성과평가(40%), 성과급심사위원회평가(10%) * 자체평가(80%)+행정관리평가(20%) → 자체평가의 개인평가 반영비율은 32% 수준
성과상여금	6급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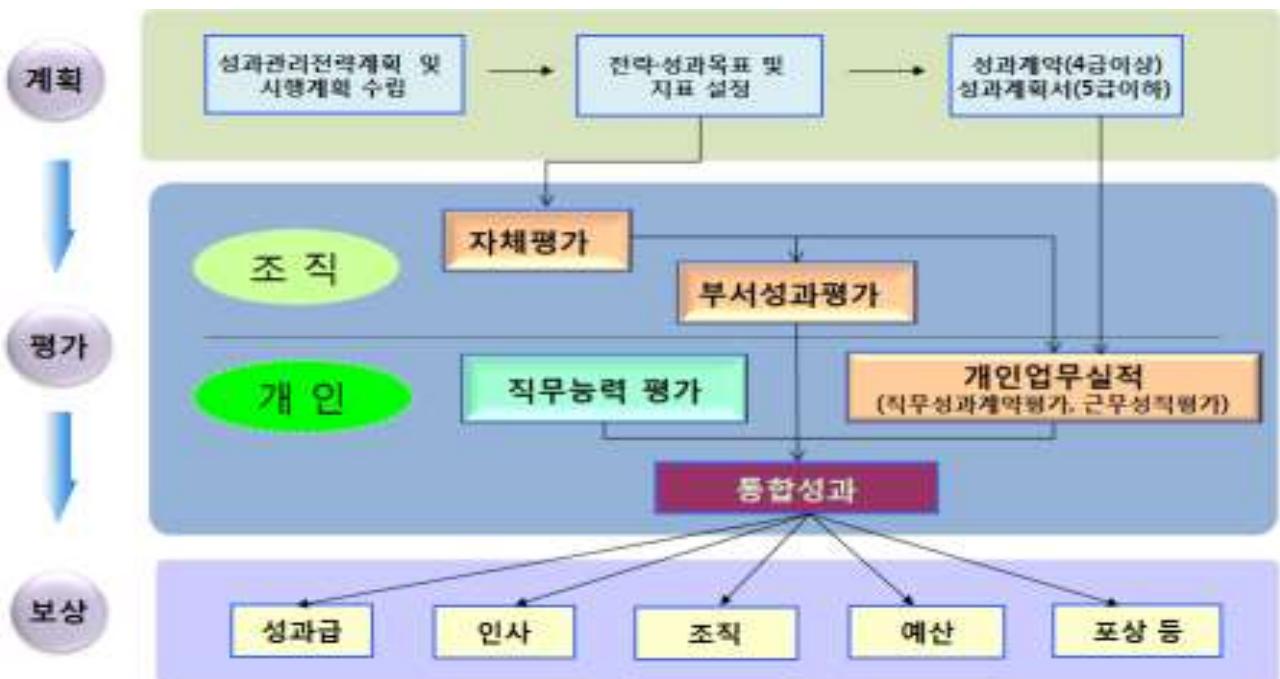
<성과관리 체계>



□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과제 포상

- '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우수과제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과제수행 동기 부여
- 포상대상 : 자체평가 결과 1등급 ~ 3등급 과제
- 포상규모 : 1등급 80만원, 2등급 50만원, 3등급 30만원

< 평가결과 환류체계도 >



3. 변화관리 계획

3-1. 업무프로세스 개선

□ 근무시간 자율설계

-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자율적·효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여 조직 생산성 제고
 - 자기개발, 자녀 돌봄 등으로 근무시간 선택제 등을 희망하는 직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신청방법 안내
- 유연근무활용이 증가하더라도 조직 전체 생산성이 유지·향상될 수 있음을 전체 구성원이 인식하고 이를 조직문화 개선 동력으로 사용
 -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12~13시) 앞 또는 뒤 1시간을 자율적으로 붙여 사용하는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 집중근무시간 운영

- 위원회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하루 중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을 핵심근무시간(Core Time)으로 정하여 업무 몰입
- 집중근무시간에는 전화, 인터넷, 티타임 등 사적인 용무와 휴식을 금지하고, 회의, 대면결재 대기 등 업무 집중을 저해시키는 행위 자제
- 주어진 업무시간 안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업무지시는 가능한 오전에 실시하고, 업무시간 내에서 온라인 단체대화 활용
- 근무혁신방안 추진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관한 상급자의 우려 및 만성적 초과근무를 지속해온 조직원의 관성을 축소

3-2. 조직문화 개선

□ 유연근무제 활용 정착

- 자율방역체계 하(포스트 코로나19) 언택트 근무형태가 이미 뉴노멀 (New Normal)인 시대에 맞춰 유연근무제가 조직문화에 정착되도록 지속적 노력
- ※ 코로나19 팬데믹 하 조직기능 및 업무연속성을 유지를 위한 가외성 확보 수단으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이 필수적이었음
- 유연한 근무환경 제공, 출퇴근 시간 절감 등 구성원 모두가 공감 할 만한 실질적 변화 제공하여 조직구성원의 삶의 질 개선 유도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활용에 대한 구성원 인식전환 및 간부직 직원의 솔선수범 노력 지속

□ 연가사용 활성화

- 일과 삶의 균형이 전체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조직이 학습하고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 정착

- '23년 권장연가 일수를 반영하여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 부서장은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 조정
- 간부직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과·팀장 이상 부서장은 매월 연가사용계획 수립·실시

□ '가족 사랑의 날' 운영

- '가족 사랑의 날' 주2회(수, 금) 운영으로 자기계발 및 여가생활 충족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정착
- '가족 사랑의 날'은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고 국회, 예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초과근무 인정
- 정시퇴근 유도를 위해 구내방송으로 '가족 사랑의 날'을 공지하고 부서별로 순회하여 정시 퇴근 독려

□ 권장연가제 및 연가저축제 운영

-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당해 최소 사용해야 할 연가일수를 공지하고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가 중 일부를 저축
- 권장연가일수 대비 미사용 연가일수는 연가보상비 지급일수에 제외
- 연가사용 활성화 차원에서 연가보상 작업시 1~2일을 저축연가로 전환

3-3. 직원교육 강화

□ 다양한 시책교육을 통한 주요 국정과제 공유·확산

- 국정철학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사 초빙 교육 및 자체교육 실시
- 연간 교육훈련 시간의 40% 이상을 공직가치, 국정철학과 연계한 부처지정학습 이수를 의무화

- 공직가치 내재화를 위해 사이버 교육을 통한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 독려

□ 공통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청취 및 전화외국어 과정을 운영
-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직원의 연중 다양한 청렴활동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방안 마련

□ 성과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관리 강화

- 직장 내 일과 학습을 연계한 비정형 학습도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상시학습 인정기준을 정비하여 학습 효율성 제고
- 직원이 조직목표와 연계한 자기개발계획서 수립 시 개인의 부족 역량을 제시하고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을 추천하는 코칭 실시

3-4.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통한 방송통신정책 추진 지원

- 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집행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 조기집행 달성을 위한 점검 추진
-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모절차 도입을 통해 사업자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예산집행 및 정책의 품질 제고
- 예산 및 기금 사업관리지침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사업수행 계획서 양식, 부속서류 등을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서류요청 관행 개선

3-5. 성과지표 관리방법 개선

□ 성과지표 관리방법

-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과제 성과지표 대표성 연구결과('16년)로 도출된 과제별 예비성과지표 발굴 및 관리(지표 POOL)

- '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선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
- 성과관리 수준제고를 위해 국 총괄담당 등으로 성과관리 T/F 구성·운영
- 성과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회의, 워크숍 등 개최 추진
- 성과관리 제도개선 및 위원회 내 성과주의 확산방안 마련을 위한 타 부처 우수사례 벤치마킹
- 사후규제 업무 위주인 방통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
- 정책토론·공청회·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업무 유형별 다양한 의견수렴
- 자체평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성과지표 선정, 관리에 대한 자문을 충분히 반영하고 성과지표의 합리성 확보

□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제고

- 전략목표 수준의 기관대표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총체적인 업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가급적 정량지표(계량지표)를 사용
- 성과지표의 구체성·명확성이 떨어지는 복합지표는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단일지표로 개발 노력

□ 성과지표의 변별력 강화

- 성과지표 목표 수준을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평가 시 과제 간 변별력을 확보하고 정책개선 효과증진 노력
- 목표치의 적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도전적인 성과지표 설정을 유도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정책대상별 유형별 의견수렴 절차 강화

- 자체평가 평가지표 중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 간 협업 노력도' 점수를 15점으로 높게 부여
- 정책추진단계별(수립-집행-환류)로 이해관계자, 정책고객 및 국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설명회, 공청회, 관계기관·부서 간 협업 등 정책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얻고자 하는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
- 정부 운영에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활동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

*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기회 확보, 참여수준 심화 등

**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 '23년도 관리대상 과제 및 의견수렴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과제 : '23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 25개○ 의견수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국민, 정책고객집단,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정책토론·이슈토론·간담회·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 전담부서 : 과제담당부서○ 관리체계 : 과제별 의견수렴 결과 및 정책반영도를 자체평가 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관리

□ 정책참여 활성화

-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별 현장의견 수렴 외 '방통위 홈페이지'를 활용(온라인, 모바일)하여 방통위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의견 청취
-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 국민 관심이슈 등에 대해 의견제시, 찬반토론, 설문조사,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 안전관리 담당자(행정법무담당관 제안담당)를 지정하여 등록안전, 안전 검토, 진행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각 부서별로 국민제안 안전 발굴 및 참여 실적을 '행정관리역량평가'에 반영하여 활성화 유도

<국민제안 의견수렴 방법>

구 분	주요내용	진행방식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대화 (국민생각함)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정부 주요정책, 국민생활 밀접 과제 등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투표·설문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온라인 찬반 투표 및 설문조사 실시	투표 및 설문조사
아이디어 공모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정책 반영 및 우수제안 포상	공모

[**불** **임**]

1. 성과지표 현황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소계	성과지표				정량지표	
		지표성격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4	3	0 (0%)	0 (0%)	2 (66.6%)	1 (33.3%)	3 (100%)
성과목표	8	10	0 (0%)	0 (0%)	8 (80%)	2 (20%)	9 (90%)
관리과제	25	43	0 (0%)	0 (0%)	24 (55.8%)	19 (44.2%)	30 (69.8%)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7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①방송사업자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건)	방송법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 + 방송 공정성 위반**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 건수 * 방송법 제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위반 **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14조(객관성) 위반	13	정량	산출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①통신·인터넷시장 제재건수(건)	연간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 유통법상, 위치정보법상 제재 건수 집계	10	정량	결과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①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조원)	과년도 지상파방송·지상파 DMB·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 사업 매출액 합계	23.4	정량	결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I-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다.	①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율(%)	① + ②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times 0.5$ ※ 5점 리커트 척도만족도 목표치 93.0을 100점으로 환산 ②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터널수 목표 달성을 $\times 0.5$ ※ '22년 목표 : 51개	100	정량	산출	-
I-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①재허가·재승인 조건이행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 $\times 0.5$]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수) $\times 0.5$]	94	정량	산출	-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II-1. 통신·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건수(건)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통한 개선실적	8	정량	산출	
II-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팩트체크 교육수료율(%)	(교육수료인원 / 교육수강인원) $\times 100$	88.9	정량	결과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III-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방송수신기 시각·청각장애인 전체 누적보급률(%)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누적 보급대수 / 전체 시각·청각 장애인 수) $\times 100$	38	정량	산출	
III-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방송산업 기반 구축률(점)	(①외주제작 정책만족도 + ②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만족도) / 2	80.2	정성	결과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IV-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주요 업무계획 이행상황 점검률(%)	(이행실적 점검 횟수/4회) $\times 100$	100	정량	산출	
	②규제심사 절차 준수도(%)	심사절차 준수 건수 / 총 심사 건수 $\times 100$	75%	정량	산출	
IV-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국제 컨퍼런스·회의 등 국제행사 활동 건수	국제 컨퍼런스 및 회의 등 국제행사 참여 실적	3	정량	산출	
	②보도자료 온라인 콘텐츠 제작률(%)	온라인 콘텐츠 게재건수/보도자료 배포건수	100	정량	산출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I-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다.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①미디어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율(%)	① + ② ①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율(0.5) -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의견수렴X0.1)+(정책 연구과제 추진 X0.2)+(협약제도 방송법 개정안 마련X0.2) ② 소유·겸영규제 개선 추진율(0.5) - (소유·겸영규제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X0.1)+(소유·겸영규제 개선 관련 의견수렴 X0.2)+(개정안 마련 X0.2)	96	정량	산출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①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센터 이용자 설문 조사 (5점 리커트 척도, 100점 만점 환산)	93.0	정성	결과	-						
	②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도(%)	{(교육 후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점수 - 교육 전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점수)/교육 전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점수 * 100}	6	정량	결과	-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①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자 만족도(점)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자 만족도를 정량화된 설문을 통해 계량 측정 (7점척도 설문을 백분율로 환산)	87.6	정성	결과							
	②콘텐츠 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개)	참가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	206	정량	산출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①방송통역 수어 통역사 재교육 수료인원 및 만족도(점) (공통지표)	① + ② ① 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 인원(목표 110명) × 0.5 ② 수어통역사 재교육 만족도(목표 85점) × 0.5	97.5	정성	결과							
	②방송재난 대비 중요 방송 시설 안전점검율(%)	[23년도 안전점검 시설 수 /안전점검 대상 총 시설 수(104개소)]×100	93	정량	산출							

I-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①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제고율(%)	[(재허가 세부계획 반영 건수/재허가 사전 기본 계획 수립시 세부계획으로 위임한 건수) × 0.5] +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 × 0.5]	98.4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①종편·보도PP 등의 공적책무 제고율(%)	[(방송의 공적책임 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 건수 / 관련 재승인 조건 수 ×0.5) + (공익채널 고시개정 ×0.3 + 유료방송 사전 동의 처리 ×0.2) ×100]	97	정량	산출	

II.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 강화한다.

II-1. 통신·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통신분쟁조정 활성화	①온라인 플랫폼 정책개선 건수	정책개선 건수를 결과물로 실적 산정	3	정량	결과	
	②통신분쟁 해결률 (누적%)	(누적 총 해결건수/누적 총 신청건수) × 100	66.5	정량	산출	
	③온라인 피해 상담 건수	(‘22년상담건수)÷7×12×110% - ‘22년(6~12월) 상담건수를 12개월로 환산 후 10% 상향	1,200	정량	산출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①유선시장 전기통신사업법령 준수율(%)	[(경품가이드 준수율+허위·과장 광고 기이드준수율)/2] * 100	87.9	정량	산출
③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①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지수(점)	(①×0.5)+(②×0.2)+(③×0.3)} ※①(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준수 건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총 건수)×100 ② 정책제도개선 건수 2건 ③(상시조사 실시 건수/ 상시 조사 대상 건수) X 100	70	정량	산출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	①통신서비스 피해 예방교육 역량 향상률(%)	[(계층별 교육후 역량 점수 - 교육전 역량 점수) / 교육전 역량점수] × 100	18.5	정량	산출	

II-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위치정보의 안정성·활용 강화	①위치정보 사업화 지원 만족도(점)	(신규 BM 발굴 사업화 지원 만족도 ×0.5)+(맞춤형 컨설팅 수혜자 만족도×0.5)	91	정성	결과	
	②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통) (하향지표)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각1,500명 대상 1인당 월 평균 수신량 측정	13	정량	산출	
	③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점)	교육수혜자를 대상으로 교육종료 후 만족도 조사	90	정성	결과	
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①특수유형부기통신 사업자 불법정보 기술적 조치 개선율(%)	[(상시점검 등을 통한 기술적 조치 개선(차단) 건수/목표) ×0.5] ×100 + [(불법음란정보 특징값(해시, DNA) 방침위 제공건수/목표) ×0.5]×100	100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불법 촬영 물 등 유통방지 기술 성능평가 수행률(%)	[수행건수/신청건수*0.5]*100 + [평가기술 고도화 건수*0.5]*100	97	정량	산출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III-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전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도(점)	[(방송심의활동 효과 만족도 3개 항목 각 7점척도 평균 점수)/7]*100	66.4	정성	결과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확대	①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점)	(자막방송만족도*0.87)+(수어방송만족도*0.04)+(화면해설방송만족도*0.09)	95	정성	결과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①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인식도(점)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71	정성	결과	

III-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① 외주제작시장 환경 개선 만족도(점)	외주제작 정책만족도 조사 1차·2차 평균 *5점 척도 평균을 100점 만점 환산	85.5	정성	결과	
②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만족도(%)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사업 전반적 만족도 *0.5) + (소상공인의 지원사업 전반적 만족도 *0.5)	75.0	정성	결과	
	② 방송광고 규제검토 및 개선(건)	이해관계자 회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건, 규제 재검토 및 규제개선 건	4	정량	결과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IV-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 혁신 선도	① 국정과제 이행 상황 점검률(%)	(점검횟수 / 12) × 100 ※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실적을 평가	100	정량	산출	
	② 혁신과제 이행률 (%)	(이행과제 수 / 과제 건수) × 100	100	정량	산출	
②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①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AL(%)=(T/5)×100 ※ AL : 수준율 T : 전체 기관의 수준평가 점수 평균(5점 만점)	83.4	정량	산출	
	② 비상대비 및 보안점검 달성을(%)	{[(자원조사 실시업체 / 자원조사 대상업체) × 0.5] + [(보안점검 기관 수 / 보안점검 목표 기관 수) × 0.5]} × 100	100	정량	산출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① 기존 규제정비 과제 이행률(%)	이행률(%) = (기존규제 정비 이행과제수 / 기존규제정비 과제 수) × 100	10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④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① 국정과제 교육 활성화(시간)	총 교육 이수시간 합계 / 4급 이하 현원(과장급 포함)		22시간	정량	산출	
		② 연가활용 활성화	위원회 직원의 연가사용 일수의 평균(연가사용 일수의 합/위원회 근무 직원 수)	15일	정량	산출	
	③ 공공구매 법정 의무 구매율 달성을도	$\{(중소기업제품 의무구 매기준 달성 여부 \times 0.4) + (기술개발제품 의무구 매 기준 달성 여부 \times 0.4) + (장애인생산제품 의무구매 기준 달성 여부 \times 0.2)\} \times 100$		100%	정량	산출	
	④ 적극행정 활성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12명 * 100%		100%	정량	산출	
⑤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 설계	①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율(%)	$\begin{aligned} & \text{①} + \text{②} \\ & \text{①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추진율(0.6)} \\ & \text{연구반 운영} \times 0.2 + \text{대외 의견수렴} \times 0.2 + \text{법안 마련} \times 0.2 \\ & \text{② 디지털·미디어 가이드라인 마련(0.4)} \\ & \text{연구반 운영} \times 0.2 + \text{가이드라인 마련} \times 0.2 \end{aligned}$		90%	정량	산출	

IV-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 소통 강화	① 정책소통 활성화율(%)	(주간 홍보계획 사전배포 건수) $\times 50\% +$ (오보대응건수/오보모니터링 건수) $\times 50\%$	100%	정량	산출	
	②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만족도	만족도 조사 결과(대국민 만족도 50%+대언론 만족도 50%)	78.7점	정성	결과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① 국민참여 콘텐츠 실적	방통위 정책기자단 제작 콘텐츠 및 국민 의견 제안 등 기반 콘텐츠 제작 또는 게재 건수	144건	정량	산출	
	② 유튜브 채널 활성화율(%)	$((('23년 구독자/'22년 구독자)) \times 0.5 + ((('23년 조회수/'22년 조회수)) \times 0.5)) \times 100$ ※ '23.12.31 기준	110%	정량	결과	
	③ 페이스북 채널 활성화율(%)	$((('23년 구독자/'22년 구독자)) \times 0.5 + ((('23년 도달수/'22년 도달수)) \times 0.5)) \times 100$ ※ '23.12.31 기준	110%	정량	결과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① 방송통신 국제 협력 만족도(점)	$[(\text{방송통신 인프라 강화만족도}) \times 0.5] + [(\text{방송공동제작 협력 강화 만족도}) \times 0.5]$	74.5	정성	결과	
	② 남북방송통신 교류 정책 만족도(점)	$[(\text{남북 교류협력 정책 만족도}) \times 0.4 + (\text{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만족도}) \times 0.3 + (\text{통일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만족도}) \times 0.3]$	83	정성	결과	

불임1-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환경변화에 대응한다.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공영방송 체계 및 위상 정립(국정 6-1)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업무 2-1)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국정 59-1)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업무 2-3)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국정 27-6)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업무 2-1)
	④ 신속 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국정59-2) 재난방송 운영체계 고도화(업무2-4)
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공영방송 체계 및 위상 정립(국정 6-1)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국정 27-2)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업무2-1) 미디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업무2-2)
	②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국정 27-2) 미디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업무2-2)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1. 통신·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 권리증진에 기여한다.		
	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통신분쟁조정 활성화	미디어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국정 59-3)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국정 59-4)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업무 2-3)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업무 3-1, 3-3)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업무 4-4)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국정 59-4)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업무 3-2)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업무 4-1)
	③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 강화(업무 3-2)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국정 59-4)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업무 3-4)
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위치정보의 안정성·활용 강화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국정 59-4)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국정 59-5)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 지원(업무1-11, 1-12) 방송통신 이용자 불편 해소(업무 3-7) 방송통신 불법유해정보 등 대응체계 정립(업무 3-12) 규제혁신(업무 5-2), 청년정책(업무 6-3)
	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국정59-3)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국정 59-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국정 64-3) 방송통신 불법유해정보 등 대응체계 정립(업무 3-4)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2.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조성	방송통신 불법유해정보 등 대응체계 정립 (업무 3-4)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국정59-2)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디지털포용 2-1)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한국판 뉴딜 3-2-3) 장애인정책종합계획(5. 동등한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업 무 2-3)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 강화(업무 3-2)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공영방송 체계 및 위상 정립(국정 6-1)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 (국정 6-4) 미디어산업 전반의 규제혁신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국정 27-2) OTT 글로벌 진출 협업 플랫폼 구축, 디지털 미디어 혁신성장 기반조성 및 전략 수립 (국정 27-3) 미디어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업무 1-3)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업무 2-1)
②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미디어산업 전반의 규제혁신 (국정 27-2) 미디어 콘텐츠 성장 지원 확충(업무 1-2)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②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④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⑤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 설계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 전략 및 추진체계 마련(국정 27-1) 디지털·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국정 59-3)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비전 설계(업무 1-1, 1-5) 디지털·미디어 규범 확립(업무 4)
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강화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